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	기			금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제1장 개요

I. 총괄	1
II. 세입·세출 결산	2
1. 일반회계	2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
III. 기금 결산	8
1. 보훈기금	8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
IV. 재무제표	10
1. 재정상태표	10
2. 재정운영표	12
3. 순자산변동표	14
4. 현금흐름분석	16
V. 성과보고서	18
1. 성과체계	18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제2장 검토의견

I . 총괄	21
1. 세입: 연례적 세입예산 수납 부진	21
2. 세출: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상용임금 근로자 인력·예산 관리 강화 필요	25
3. 보훈기금: 88골프장 지속 운영 결정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 수입 기반 마련 필요	31
II . 일반회계	37
[세입]	37
1. 건물대여료: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37
2. 과태료: 보훈특별고용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0
3.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47
[세출]	53
1. 생활조정수당: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추계방식 개선 필요	53
2. 고엽제수당, 고엽제환자검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하여 고엽제환자검진 실적 개선 노력 필요	62
3. 보훈심사위원회운영: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개선 필요	69
4. 교통시설이용지원: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등	75
(1)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76
(2)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선 필요	80
5.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85

6. 위탁병원 진료: 위탁진료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방식 정비 필요	93
7. 보철구 지급: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마련 필요	100
8.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관리 철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06
9. 현충시설건립: 사업관리 철저 필요	111
10. 현충시설관리: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119
11. 보훈기념행사: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122
12. 호국보훈의 달 행사: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26
13.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신규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	130
1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134
15.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편성목적 및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39
16. 국립이천호국원: 이장 대기인원 해소 필요	144
17. 국립산청호국원: 부적절한 예산 집행 지양 필요	148
18.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153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57

Ⅲ. 보훈기금 163

1.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보훈원 시설 개선 필요	163
2.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개선 필요	169
3. 골프장 위탁운영: 88관광 위탁 근거 마련 필요	175

IV.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81

1. 토지매각대: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 181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등 184

(1)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185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187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90

제1장 개요

I. 총괄

- 국가보훈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의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예산현액(총계기준)은 총 7조 2,610억원으로 일반회계 6조 4,035억원, 특별회계 122억원, 기금 8,453억원이며,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음.

< 국가보훈부 재정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반회계(A)	5,669,751	5,741,416	6,067,569	6,293,084	6,403,519
▪ 일반지출(a)	5,588,925	5,652,568	5,974,918	6,200,433	6,310,936
▪ 내부거래지출	80,826	88,848	92,651	92,651	92,58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B)	17,860	16,990	15,531	13,259	9,854
▪ 일반지출(b)	17,860	16,990	15,531	13,259	9,8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C)	2,133	2,240	2,270	2,315	2,384
▪ 일반지출(c)	2,133	2,240	2,270	2,315	2,384
보훈기금(D)	835,966	682,307	651,547	600,414	696,168
▪ 일반지출(d)	147,979	138,126	140,595	134,963	128,674
▪ 내부거래지출	180,949	180,805	150,609	120,577	90,546
▪ 여유자금운용	507,038	363,376	360,343	344,874	476,94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E)	161,346	137,808	138,762	148,730	149,093
▪ 일반지출(e)	95,063	98,473	102,707	104,002	108,628
▪ 여유자금운용	66,283	39,335	36,055	44,728	40,465
총계(A+B+C+D+E)	6,687,056	6,580,761	6,875,679	7,057,802	7,261,018
전년대비 증감률(%)	5.7	△1.6	4.5	2.6	2.9
총지출(a+b+c+d+e)	5,851,960	5,908,397	6,236,021	6,454,972	6,560,476

II.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8억 6,100만원이며, 87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1,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9억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5년 일반회계 세입징수 현황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재산수입	670	1,207	1,169	96.9	1	37
▪ 관유물대여료	159	383	351	91.6	-	3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11	824	818	99.3	1	5
경상이전수입	8,791	8,246	4,544	55.1	312	3,911
▪ 벌금,몰수금및과태료	88	41	36	87.8	-	5
▪ 변상금및위약금	51	614	23	3.7	-	591
▪ 기타 경상이전수입	8,652	6,608	2,981	45.1	312	3,316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65	248	248	100.0	-	-
▪ 면허료및수수료	3	2	2	100.0	-	-
▪ 잡수입	362	246	246	100.0	-	-
관유물매각대	35	-	-	-	-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5	-	-	-	-	-
합 계	9,861	8,718	4,458	51.1	313	3,948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6조 3,092억원에 제2차 추경 83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원을 포함한 6조 4,035억원임.
- 이 중 세출예산현액 대비 99.7%인 6조 3,845억원이 지출되고, 114 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6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지출액 중 79.8%인 5조 967억원이 보훈 급여금 등 ‘보훈심사 및 보상’사업으로 지출되었으며, 11.8%인 7,536억원이 ‘보훈의료복지’사업으로, 나머지 8.4%인 5,343억원이 국 립묘지·보훈행정 등의 사업비로 집행되었음.

< 2025년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 액
			예비비	이체	이 용	전 용				
	6,392,863	10,656	-	-	10,284 △10,284	14,475 △14,475	6,403,519	6,384,537	11,394	7,589
가. 보훈심사 및 보상	5,099,473	18	-	-	△669	7,500 △7,500	5,098,822	5,096,662	-	2,160
나. 보훈단체 지원	37,081	-	-	-	△7	-	37,074	37,044	-	29
다. 보훈의료 복지	753,180	533	-	-	-	4,190 △4,190	753,713	753,577	-	136
라. 생활안정 지원	28,952	-	-	-	△200	300 △300	28,752	28,728	-	24
마. 보훈문화	92,738	2,331	-	-	△1,442	840 △840	93,627	86,884	6,567	176
바. 보훈예우 및 국립묘지	115,913	6,973	-	-	△7,576	315 △315	115,310	107,206	4,780	3,324
사. 제대군인 지원	34,860	386	-	-	5,950 △390	473 △473	40,806	39,631	-	1,175
아. 보훈행정	138,083	416	-	-	4,334	857 △857	142,833	142,222	47	564
자. 화상감리 (내부거래)	92,583	-	-	-	-	-	92,583	92,583	-	-

< 2025년 주요사업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용	이체					
합 계	6,273,836	10,657	2,759 △3,230	96,414 △99,004	-	-	6,279,662	6,261,036	11,389	7,237
보훈보상금	3,562,819	-	7,500	-	-	-	3,570,319	3,569,419	-	900
수당	1,518,748	-	△7,500	-	-	-	1,511,248	1,510,248	-	1,000
수시보상금	9,969	-	-	-	-	-	9,969	9,857	-	112
보훈심사	1,631	18	-	△101	-	-	1,548	1,526	-	22
등록심사	6,306	-	-	△568	-	-	5,738	5,612	-	126
보훈단체지원	37,081	-	-	△7	-	-	37,074	37,044	-	29
교통시설 이용지원	10,729	533	-	-	-	-	11,262	11,258	-	4
의료지원	734,215	-	4,190	-	-	-	738,405	738,273	-	132
의료환경개선	8,236	-	△4,190	-	-	-	4,046	4,046	-	-
교육지원	26,134	-	△300	△200	-	-	25,634	25,628	-	6
취업지원	2,818	-	300	-	-	-	3,118	3,100	-	18
독립기념관	27,479	-	439	△379	-	-	27,539	27,539	-	-
보훈문화진흥	20,108	419	△900	-	-	-	19,627	19,126	468	33
현충시설	28,709	1,912	△124	1 △439	-	-	30,058	23,834	6,099	125
기념사업	16,442	-	△39	400 △401	-	-	16,402	16,385	-	17
공훈발굴및 국가유공자 등예우	10,957	-	△478	20 △20	-	-	10,479	9,998	-	481
국립묘지 조성및관리	104,956	6,973	△7,098	295 △295	-	-	104,830	97,208	4,780	2,842
제대군인 생활안정	24,692	88	5,950 △292	375 △365	-	-	30,448	29,494	-	955
참전제대군인 명예선양	10,168	298	△98	98 △108	-	-	10,358	10,137	-	221
청관사임차 및시설개선	5,236	-	-	△234	-	-	5,002	4,996	-	6
일반행정	4,932	416	-	91 △325	-	-	5,114	4,963	42	109
보훈서비스 지원	4,456	-	34	△61	-	-	4,429	4,334	-	95
정보화	4,432	-	-	-	-	-	4,432	4,428	-	4
회계기금간 전출	92,583	-	-	-	-	-	92,583	92,583	-	-

< 2025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실적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비 비	예 산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용 액
				전용등	이 용	이 체					
합 계		119,027	0	878 △350	4,299	0	0	123,855	123,500	5	350
인 건 비	소 계	106,652	-	714 △327	4,083	-	-	111,123	110,996	-	127
	본 부	38,829	-	44 △299	1,636	-	-	40,210	40,159	-	51
	소속기관	67,823	-	670 △28	2,447	-	-	70,912	70,837	-	76
기 본 경 비	소 계	12,375	-	164 △23	216	-	-	12,732	12,504	5	223
	본부총액 인건비성경비	2,583	-	△23	-	-	-	2,560	2,509	-	51
	본부운영	4,089	-	109	50	-	-	4,248	4,207	5	36
	지방청총액 인건비성경비	837	-	55	-	-	-	892	876	-	16
	국립묘지운영	1,800	-	-	-	-	-	1,800	1,769	-	31
	서울지방청운영	1,220	-	-	89	-	-	1,309	1,273	-	36
	부산지방청운영	524	-	-	7	-	-	531	505	-	26
	대전지방청운영	454	-	-	37	-	-	491	470	-	21
	대구지방청운영	372	-	-	11	-	-	383	378	-	4
	광주지방청운영	496	-	-	22	-	-	518	516	-	3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LPG 세금인상분 보조금 부담사용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금으로, 6,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00만원을 수납하고,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B/A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67	19.4	15.7	80.9	-	3.7
기타재산수입	39	10.8	7.1	65.7	-	3.7
기타경상이전수입	28	8.6	8.6	100.0	-	-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98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93.8%인 92억 4,2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 업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용	이 용				
국가유공자등차량지원	9,854	-	-	-	9,854	9,242	-	612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기관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내역 >

(단위: 백만원, %)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B/A
합 계	154	44	44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54	44	44	100.0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운영비 23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23억 8,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제주보훈업무지원	2,384	2,384	2,384	-	-

Ⅲ. 기금 결산

1. 보훈기금

- 2025회계연도 보훈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6,961억 6,8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43.8%인 3,052억 5,571만원으로, 그 주요 원인은 골프장 매각 미실현에 따라 매각대금이 미회수 되었기 때문임.

< 2025년 보훈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696,168	305,256	43.8	합 계	696,168	305,255	43.8
자 체 수 입	196,930	63,890	32.4	사 업 비	127,830	122,834	96.1
정부내부수입	145,127	144,510	99.6	기금운영비	844	786	93.1
여유자금회수	354,111	96,856	27.4	정부내부지출	90,546	90,486	99.9
				여유자금운용	476,948	91,149	19.1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 2025회계연도 동 기금의 조달 및 운용 계획 규모는 1,490억 9,300만원이었으나, 수입과 지출 실적은 계획대비 98.9%인 1,475억 1,400만원(순계 기준)으로, 그 주요 원인은 토지매각대 등 수입항목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낮았기 때문임.

< 2025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149,093	181,090 (147,514)	121.5 (98.9)	합 계	149,093	181,090 (147,514)	121.5 (98.9)
자 체 수 입	8,751	11,207	128.1	사 업 비	108,534	107,833	99.4
정부내부수입	92,583	92,583	100.0	기금운영비	94	81	86.2
여유자금회수	47,759	77,300 (43,724)	161.9 (91.6)	여유자금운용	40,465	73,176 (39,600)	180.8 (97.9)

IV.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¹⁾

-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자산은 3조 1,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원(0.7%)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금 여유자금 운영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이 286억원(7.6%) 감소하였으나, 신규 건물 취득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513억원(1.9%)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25회계연도 국가보훈부의 부채는 89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원(55.8%)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훈기금 미지급금의 증가로 차입부채가 308억원(57.3%)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11억원(0.4%) 감소한 3조 322억원임.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 재정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자산합계(a)	3,121,965	3,100,920	21,045	0.7 %
I. 금융자산	349,062	377,705	(28,643)	(7.6 %)
II. 유·무형자산	2,762,820	2,711,569	51,251	1.9 %
III. 기타자산	10,083	11,645	(1,562)	(13.4 %)
부채합계(b)	89,733	57,583	32,150	55.8 %
I. 차입부채	84,656	53,815	30,841	57.3 %
II. 충당부채	3,496	3,019	477	15.8 %
III. 기타부채	1,581	749	832	111.1 %
순자산(a-b)	3,032,233	3,043,336	(11,103)	(0.4 %)

2. 재정운영표²⁾

-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6조 4,359억원이 발생하였음.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6조 3,308억원, 관리운영비 1,624억원, 비배분비용 10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34억원, 비교환수익 등 249억원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수익 등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전년 대비 1,645억원 증가한 6조 4,608억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부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함.
- 프로그램순원가는 보훈부 사업예산 등인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차감한 6조 3,308억원임.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5조 967억원과 보훈의료복지 8,490억원 등임.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에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재정운영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6,330,798	6,159,574	171,224	2.8 %
II. 관리운영비	162,407	152,909	9,498	6.2 %
III. 비배분비용	997	3,593	(2,596)	(72.3 %)
IV. 비배분수익	33,422	19,811	13,611	68.7 %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6,460,779	6,296,265	164,514	2.6 %
VI. 비교환수익 등	24,863	28,494	(3,631)	(12.7 %)
VII. 재정운영결과(V-VI)	6,435,916	6,267,771	168,145	2.7 %

3. 순자산변동표³⁾

-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3조 3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 감소하였음.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6조 4,359억원,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조 4,208억원, 조정항목 4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제재금수익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6조 4,257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및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9억원으로 구성됨.
-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78억원, 자산재평가이익 △ 38억원으로 구성됨.

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 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순자산변동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기초순자산	3,043,336	2,184,025	859,311	39.3 %
II.재정운영결과	6,435,916	6,267,771	168,145	2.7 %
III.재원의조달및이전	6,420,816	6,271,299	149,517	2.4 %
IV.조정항목	3,996	855,783	(851,787)	(99.5 %)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3,032,233	3,043,336	(11,103)	(0.4 %)

4. 현금흐름분석⁴⁾

○ 2025회계연도 기초 현금 28억원이며, 기말 현금 50억 원으로
현금의 증감은 22억 원임

○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330억 원임

현금유입은 6조 4,847억 원이며, 이는 주로 국고수입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현금유출은 6조 4,516억 원이며, 이는 주로 사회보장지원금
지급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 309억 원임

현금유입은 3,204억 원이며, 이는 주로 투자증권 처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현금유출은 3,513억 원이며, 이는 주로 투자증권 취득이 반영
되었기 때문임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A)	2024년(B)	증 감	
			금액(C=A-B)	비율(C/B)
I.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049	-	33,049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850)	-	(30,85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IV. 현금의증감(I + II + III)	2,198	-	2,198	-
V. 기초의현금	2,822	-	2,822	-

V.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국가보훈부 임무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한다”이고, 비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든다”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5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프로그램 목표, 12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

구 분	전 략 목 표	프 로 그 램 목 표	성 과 지 표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5	9	12	11	1	-
비율(%)	-	-	100	91.7	8.3	-

2. 20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2025년 성과 달성 총괄현황 >

(단위 : 개, %)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도 평균
5	9	12	-	10	2	99.1%
		100.0%	-	83.3%	16.7%	

○ 프로그램목표 9개에 대하여 총 12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 중 10개는 달성, 2개는 미달성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 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보훈문화)(V-1)”의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등 10개 지표를 달성하고,
- 전략목표Ⅱ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중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Ⅱ-1)’, ‘자기자본 이익률(Ⅱ-2)’ 2개 지표를 미달성함.

< 프로그램목표별 성과지표 달성 현황 >

구 분	'24년 달성	'25년 달성
전략목표Ⅰ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으로 공정한 보훈을 실현한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실시한다(Ⅰ-1)		
■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률 (단위:%)	○	○
□ 보상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 행정환경을 조성한다(Ⅰ-2)		
■ 정보서비스 적기 처리율 (단위:%)	○	○
■ 정보화사업 사용자 만족도 (단위:점)	신규	○
전략목표Ⅱ :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로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		
□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및 품질 향상으로 보훈의료복지서비스 체계를 혁신한다(Ⅱ-1)		
■ 보훈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 만족도 (단위:점)	X	X
□ 88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등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한다(Ⅱ-2)		
■ 자기자본 이익률 (단위:%)	X	X
■ 골프장 1인 객단가 (단위:천원)	신규	○
□ 국가유공자의 취업·대부·교육지원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향상시킨다(Ⅱ-3)		
■ 신규 취업자 고용유지율 (단위:%)	○	○
■ 대부지원 만족도 (단위:점)	○	○
전략목표Ⅲ :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존중하고 예우한다		
□ 국립묘지 사망 시 예우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며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활용한다(Ⅲ-1)		
■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 평가 (단위:점)	○	○
전략목표Ⅳ : 제대군인과 참전군인의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선양한다(Ⅳ-1)		
■ 제대군인 취·창업률 (단위:%)	○	○
전략목표Ⅴ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한다		
□ 국민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보훈문화 활동을 활성화한다(Ⅴ-1)		
■ 보훈문화의식 개선도 (단위:점)	○	○
□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단체 선양활동을 추진한다(Ⅴ-2)		
■ 보훈단체에 대한 호감도 (단위:회)	○	○

*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제2장 검토의견

I. 총괄

1. 세입: 연례적 세입예산 수납 부진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

□ 국가보훈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토지대여료·건물대여료·기타 재산수입·과태료·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 잡수입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세입예산액은 98억 6,100만원으로 이 중 87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39억 4,8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1,3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6,608	2,981	3,316	312	34.5	45.1
과태료	88	36	36	-	-	40.9	100.0
장제부과금	-	5	-	5	-	-	-
변상금	23	23	23	-	-	99.4	100.0
위약금	28	591	-	591	-	0.3	0.0
기타재산대여료	35	-	-	-	-	-	-
건물대여료	94	313	284	29	-	302.1	90.8
기타관유물대여료	-	1	1	-	-	-	100.0
토지대여료	65	69	66	3	-	101.4	95.5
기타재산이자수입	511	824	818	5	1	160.1	99.3
면허료및수수료	3	2	2	-	-	78.5	100.0
기타잡수입	362	246	246	-	-	67.9	99.9
계	9,861	8,718	4,458	3,948	313	45.2	51.1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최근 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2025년도 세입 수납액은 44억 5,800만원으로 예산액 98억 6,100만원 대비 수납률이 45.2%에 그쳤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도 수납률이 각각 55.9%, 45.6%, 67.7%, 36.5%, 61.3에 불과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예산 대비 수납률(B/A)	세입예산 오차(B-A)
2020년	8,277	4,626	55.9	△3,651
2021년	8,820	4,019	45.6	△4,801
2022년	9,198	6,227	67.7	△2,971
2023년	9,573	3,498	36.5	△6,075
2024년	9,851	6,040	61.3	△3,811
2025년	9,861	4,458	45.2	△5,403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해마다 약 30억원에서 60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약 54억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 세입예산은 각 세입항목 수납액의 예상치로서,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수납실적 즉 결산액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세입 결산 및 예산안 편성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결산액과 다음연도 예산안 규모의 차이가 36억원~63억원(58.2%~181.9%)에 달함.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결산 및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

전년도 결산(A)		다음연도 예산안(B)		증감	
				(B-A)	(B-A)/A
2019년	3,041	2021년	8,820	5,779	190.0
2020년	4,626	2022년	9,198	4,572	98.8
2021년	4,019	2023년	9,573	5,554	138.2
2022년	6,227	2024년	9,851	3,624	58.2
2023년	3,498	2025년	9,861	6,363	181.8
2024년	6,040	2026년	9,846	3,806	63.0

자료: 국가보훈부

- 이러한 결산액과 예산안 간 괴리는 결산 실적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거나 전년도 예산액에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증액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납액이 한번도 63억원을 초과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 79억 4,800만원부터 매년 증액되고 있음.

< 최근연도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8,277	8,820	9,198	9,573	9,851	9,861	9,846
전년대비 증감률	+4.1	+6.6	+4.3	+4.1	+2.9	+0.1	△0.2

자료: 국가보훈부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각 세입항목의 수납율 추이, 최근 5년간 수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세출: 상용임금 집행계획 수립을 통한 상용임금 근로자인력·예산 관리 강화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상용임금(110-03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기본경비나 주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음⁵⁾.

□ 국가보훈부는 2025회계연도에 총 28개의 세부사업에서 617억 1,000만원의 상용임금을 편성하였고, 11억 9,500만원을 이·전용 등을 통해 감액한 후 예산현액 605억 1,500만원 중 576억 5,600만원(95.3%)을 집행하고 28억 5,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상용임금(110-03)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심사위원회운영	397	397	-	△77	320	310	-	10	394
등록관리	180	180	-	△24	156	151	-	5	197
보훈단체운영및산상활동등	45	45	-	△3	41	41	-	-	49
취업지원	1,366	1,366	-	-	1,366	1,366	-	-	1,496

5)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현대미술관	2,148	2,148	-	△98	2,050	2,024	-	26	2,338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226	1,226	-	-	1,226	1,178	-	48	1,351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1,054	1,054	-	△74	980	973	-	7	1,16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189	189	-	-	189	177	-	13	206
국립서울현충원	3,304	3,304	-	△98	3,207	3,190	-	17	3,618
국립대전현충원	3,989	3,989	-	△57	3,932	3,909	-	23	4,403
국립4.19묘지	293	293	-	△10	283	277	-	6	321
국립3.15묘지	258	258	-	-	258	258	-	0	284
국립5.18묘지	725	725	-	△33	693	685	-	8	803
국립영천호국원	1,840	1,840	-	245	2,085	1,834	-	252	1,987
국립임실호국원	1,897	1,897	-	△20	1,877	1,645	-	232	2,070
국립이천호국원	1,658	1,658	-	△340	1,318	1,253	-	65	1,728
국립산청호국원	1,520	1,520	-	△60	1,460	1,446	-	14	1,683
국립신암선열공원	249	249	-	-	249	236	-	13	275
국립괴산호국원	1,558	1,558	-	49	1,607	1,599	-	7	1,724
국립제주호국원	1,601	1,601	-	△316	1,285	1,251	-	35	1,775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4,192	4,192	-	-	4,192	4,180	-	12	4,596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55	55	-	5	59	59	-	0	61
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174	174	-	△13	162	160	-	2	189
사회복무요원운용	706	706	-	△137	568	558	-	10	706
보훈정책홍보	71	71	-	5	76	76	-	0	78
이동보훈팀운영	1,151	1,151	-	-	1,151	1,074	-	77	1,295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29,252	29,252	-	-	29,252	27,289	-	1,963	28,920
보훈데이터센터설치운영	614	614	-	△142	472	461	-	11	671
합계	61,710	61,710	-	△1,195	60,515	57,656	-	2,858	64,383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상용임금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까지 기관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용임금 집행계획’에는 사업별, 직종별 정·현원 및 예산 현황 등을 반영한 정원계획(기간제, 무기계약직 구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용임금 집행계획은 연초에 사업별·직종별 정·현원과 소요예산을 사전에 점검하여 인건비 부족을 방지하고, 채용 수요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사업별로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매년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상용임금을 집행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상용임금이 편성된 세부사업의 상용임금 근로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정원(2,308명) 대비 현원(1,806명)은 502명 부족하고, 2025년 말 기준으로는 정원(2,332명) 대비 현원(1,722명) 610명이 부족한데,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별 상용임금 근로자 정·현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사업명	2024년말 기준		2025년말 기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보훈심사위원회운영	8	7	8	7
등록관리	5	5	5	4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1	1	1	1
취업지원	38	38	38	3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58	58	58	54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31	30	31	30
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23	23	23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	5	6	6
국립서울현충원	95	86	95	89
국립대전현충원	114	109	114	109
국립4.19묘지	9	9	9	9
국립3.15묘지	8	8	8	8
국립5.18묘지	23	23	23	22
국립영천호국원	48	47	48	45
국립임실호국원	48	45	48	43
국립이천호국원	29	29	41	39
국립산청호국원	44	39	44	39
국립신암선열공원	7	7	7	7
국립괴산호국원	44	44	44	44
국립제주호국원	44	38	44	34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107	107	107	107
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1	1	1	1
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5	5	5	5
사회복무요원운용	37	32	49	39
보훈정책홍보	2	2	2	2
이동보훈팀운영	37	35	37	35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1,421	958	1,421	867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15	15	15	15
합 계	2,308	1,806	2,332	1,722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5년 사업별 상용임금 예산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보수(110-01목) 또는 일용임금(110-04목)으로의 예산 조정으로, 상용임금을 포함한 인건비⁶⁾ 운영에 대한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2025년 상용임금 예산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 등 조정				금액
	~에서		~으로		
내역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58]국립영천호국원	상용임금	245
내역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63]국립괴산호국원	상용임금	49
내역변경	[431]사회복무요원운용	상용임금	[433]보훈정책홍보	상용임금	5
이용	[327]보훈심사위원회운영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77
이용	[328]등록관리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24
이용	[315]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3
이용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운영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70
이용	[346]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상용임금	[101]본부인건비	보수	34
이용	[346]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40
이용	[351]국립서울현충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76
이용	[353]국립대전현충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27
이용	[354]국립4.19묘지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0
이용	[356]국립5.18묘지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5
이용	[360]국립이천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340
이용	[361]국립산청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60
이용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20
전용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고용부담금	1
전용	[431]사회복무요원운용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32
전용	[200]본부운영기본경비(총액)	상용임금	[103]지방보훈청인건비	보수	12
세목변경	[353]국립대전현충원	상용임금	[353]국립대전현충원	일용임금	30
세목변경	[367]국립제주호국원	상용임금	[367]국립제주호국원	일용임금	1

6) 인건비는 보수(110-01목), 기타직보수(110-02목), 상용임금(110-03목), 일용임금(110-04목), 연가보상비(110-05목)으로 구분됨.

구분	전용 등 조정				금액
	~에서		~으로		
세목변경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운영	상용임금	[410]국립대한민국임시정 부기념관운영	일용임금	28
세목변경	[359]국립임실호국원	상용임금	[359]국립임실호국원	일용임금	20
세목변경	[356]국립5.18묘지	상용임금	[356]국립5.18묘지	일용임금	28
세목변경	[351]국립서울현충원	상용임금	[351]국립서울현충원	일용임금	22
전용	[395]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일반수8배	[395]국제보훈교류협력사업	상용임금	5
기금계획변경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상용임금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일용임금	124
기금계획변경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상용임금	[474]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고용부담금	18

(자료: 국가보훈부)

○ 상용임금 집행계획은 채용 계획 변경, 결원 발생, 예산 조정 사유 등을 당초 계획과 비교·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집행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향후, 국가보훈부는 상용임금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과 상용임금 근로자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보훈기금: 88골프장 지속 운영 결정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수입 기반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금·전입금·국민성금 등을 재원으로 1981년 「보훈기금법」(舊 원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보훈기금의 수입은 88골프장 운영수입, 대부원리금 회수, 복권기금 전입금, 예탁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4가지 계정(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나누어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5년 보훈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결산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수입	합계	432,198	419,008	564,847	325,626	305,256
	자체수입	75,715	76,992	78,902	69,886	63,890
	정부내부수입	261,357	229,814	209,075	177,563	144,510
	여유자금회수	95,126	112,202	276,870	78,177	96,856
지출	합계	432,198	419,008	564,847	325,626	305,256
	사업비	139,339	127,450	129,173	128,728	122,834
	기금운영비	765	795	827	767	786
	정부내부지출	180,937	180,803	150,588	120,575	90,486
	여유자금운용	111,158	109,960	284,259	75,556	91,149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최근 5년간 보훈기금의 자체수입 및 사업비 예·결산 현황⁷⁾을 살펴보면, 매년 기금 수입 수납률이 저조한데, 88골프장 매각 결정이 철회되지 않아 예산액에 매각대금이 포함된 것에 기인함⁸⁾.

○ 88골프장은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2015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88골프장 매각 방침을 재확인하였으며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최근 5년 보훈기금 자체수입 및 사업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체수입			사업비·기금운영비		
	예산액	결산액	수납률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2021년	202,427	75,715	37.4	145,857	140,104	96.1
2022년	211,290	76,992	36.4	125,411	128,244	102.3
2023년	189,947	78,902	41.5	132,538	130,000	98.1
2024년	193,414	69,886	36.1	125,726	129,495	103.0
2025년	196,930	63,890	32.4	116,864	123,620	105.8

(자료: 국가보훈부)

7) 수입은 기금 자체수입, 지출은 기금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이며, 정부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회수·운용 제외
 8)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1년 1,227억, '22년 1,320억, '23년 1,180억, '24년 1,227억, '25년 1,320억 계상

□ 국가보훈부는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골프장 매각대금을 계상하고 지출 항목에 골프장 운영비 및 시설투자 예산 편성을 반복하여 국회 예·결산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매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2025년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⁹⁾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골프장 운영편익(30년 운영 수익 및 자산가치 증가)이 매각편익(매각대금 및 30년간 매각대금 운용수익) 보다 최대 3,658억원 높게 판단된 바 있음.

○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 88골프장 매각 철회¹⁰⁾를 보고하였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88골프장 매각 여부 관련 연구용역 결과〉

구분	운영편익		매각편익	비고
	매각가 기준	국유재산 기준		
예상 매각대금	-	-	452,085 (35,619)*	88골프장 5년 평균 매출액 및 최근 매각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자본환원을 평균 적용
매각대금 운용수익	-	-	315,652	최근 5년 평균 기금운용수익률(2.66%) 적용
30년 후 토지가치	750,659	559,924	-	매각가(4,148억) 및 국유재산(3,094억) 토지가격 기준
30년 골프장 운영이익	382,887	382,887	-	최근 10년 88골프장 평균 운영이익(127.6억) 적용
계	1,133,546	942,811	767,737	운영편익 3,658억원~1,751억원 ↑

* 골프장 외 부지(46,547㎡, 59필지) 매각대금

(자료: 국가보훈부)

9) 수행기간: '25.7.25.~'25.11.21.(4개월)

10) '26.8.5. 대통령 보고

□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는 장기간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분과 골프장 운영이익을 최근 10년 88골프장 평균 운영이익인 127.6억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나, 최근 영업실적은 내장객 감소와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으며, 영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25년 당기순이익은 111.2억으로, 내장객 수는 2022년 18.7만명에서 2025년 16.5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율도 2022년 42%에서 2025년 34%로 하락하였음.

○ 2025년 88골프장 입장료 수입(228억 200만원)과 88골프장 입장료 외 수입(95억 6,600만원)은 총 323억 6,800만원으로, 보훈기금 자체수입(638억 8,600만원)의 50.7%를 차지하는 핵심 자체수입원임.

<88골프장 최근 5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내장인원(명)	영업수익			
		총 수입	총 비용	총 이익	이익율(%)
2021년	184,380	32,418	19,748	12,670	39
2022년	187,005	33,853	19,740	14,113	42
2023년	179,976	33,739	19,736	14,003	42
2024년	167,923	33,269	20,686	12,582	38
2025년	165,391	33,092	21,971	11,121	34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 증가, 젊은 층 골프 인구 감소 등으로 국내 내장객 수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며, 특히 2025년에는 고객용 골프카 배터리 교체주기에 따른 교체, 고객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배상금 등의 특이소요로 비용이 증가하여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라는 설명임.

○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매각 불확실성으로 인해 노후 시설에 대한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바, 향후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시설투자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¹¹⁾¹²⁾.

<최근 10년간 골프장 시설투자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액	이 월 액	자 체 변 경	예 산 현 액	집 행 액	불 용 액
2016년	928	-	-	928	650	278
2017년	1,625	-	-	1,625	1,493	132
2018년	1,340	-	-	1,340	1,102	238
2019년	1,184	-	-	1,184	1,122	62
2020년	1,521	-	-	1,521	1,294	227
2021년	1,122	-	-	1,122	1,064	58
2022년	2,580	-	-	2,580	2,379	201
2023년	5,327	-	398	5,725	5,530	195
2024년	3,197	-	180	3,377	3,365	12
2025년	4,077	-	300	4,377	4,377	0.2

(자료: 국가보훈부)

11) 기획예산처의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도 보훈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기 전,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음.

12)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인근 골프장인 뉴서울CC(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시설투자는 2025년 60억 3,000만원, 2024년은 55억 1,200만원 규모임.

〈최근 3년 시설투자 내역〉

구 분	내역	금액
2023년	사무실 이전	1,621
	코스 내 조명시설 교체(2차)	1,426
	오수처리장 침지형 분리막 교체	108
	보일러 및 온수탱크 교체	282
	코스 주관로 교체(1차)	990
	코스 내 안전가드레일 설치	385
	코스관리 장비 13종	635
	골프카, 작업차량, 오토바이	83
	소 계	5,530
2024년	남자락카 리모델링	1,723
	카트고 화재 방재보완 시스템 구축	179
	급탕용 히트펌프 교체	17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스템	85
	코스 주관로 교체(2차)	1,138
	상습결빙지역 발열 콘크리트포장	48
	실외연습장 진행관리실 설치	18
	소 계	3,365
2025년	전력설비 증설 공사	2,851
	코스 주관로 교체(3차)	1,226
	소계	4,077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88골프장 시설투자, 경영 효율화 및 중장기 경영 계획 마련 등을 통하여 보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II. 일반회계

[세입]

1. 건물대여료¹³⁾: 수납액 증가를 반영한 세입 증액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건물대여료”는 국가보훈부 소유 구내식당과 매점 등 국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건물대여료 수입으로, 2025년 세입예산액 9,400만원보다 많은 3억 1,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억 8,400만원을 수납(수납률 302.3%)하고, 나머지 2,900만원은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건물대여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건물대여료	94	94	-	94	313	284	29	-	98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연도별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3,700만원, 2024년 4,100만원, 2025년 2억 8,400만원, 2026년 6월 기준 8,400만원으로

13)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또한 2023년 4,900만원, 2024년 9,800만원, 2025년 3억 1,300만원, 2026년 6월 기준 1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3	94	49	37	39.5	76.2	12	-
2024	94	78	41	43.6	52.6	37	-
2025	94	313	284	302.3	90.7	29	-
2026.6	98	154	84	85.7	54.5	70	-

(자료: 국가보훈부)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보다 건물 내에 임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임대료 또한 현실화하여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예를 들면, 서울현충원의 경우 꽃집 임대를 2024년부터 시작하였고, 임대료는 2024년 1,100만원에서 2025년 6,3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2025년 기준으로 서울·대전현충원, 영천·임실·괴산호국원, 임시정부 기념관 등에서 건물대여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매년 1억 5,000만원 이상의 수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건물대여료 상승 수납 내역〉

(단위: 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대전현충원	1,760	1,760	-
영천호국원	1,188	1,188	-
임실호국원	1,050	1,050	-
괴산호국원	1,535	1,535	-
임시정부기념관	3,807	1,027	2,780
서울현충원	20,878	20,878	-
합계	30,218	27,438	2,780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최근 건물대여료 상승 추세 및 수납액 증가 규모를 감안하여 건물대여료 수입계상액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¹⁴⁾: 보훈특별고용 취업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과태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5년 세입예산액은 8,800만원으로 이 중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2025년도 과태료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	88	88	-	88	36	36	-	-	11

주 :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함에 따라 수납액이 ‘-’ 로 표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5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4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해도 존재함.

14) 세부사업: 과태료(56-563)

- 과태료의 최근 10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6,7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22년 7,400만원으로, 2023년에는 8,8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다가, 2026년 예산은 수납저조를 고려하여 1,100만원으로 감액됨.

<최근 10년간 과태료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과태료 예산 (A)	과태료 전체 수납액(B)	수납률 (B/A)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그 외 과태료
2015년	24	33	137.5	33	0
2016년	24	113	470.8	113	0
2017년	25	59	236.0	59	0
2018년	49	30	61.2	30	0
2019년	67	95	141.8	95	0
2020년	67	3	4.5	3	0
2021년	67	-	-	0	0
2022년	74	14	18.9	10	4
2023년	88	18	20.5	0	18
2024년	88	-	-	0	0
2025년	88	36	40.9	15	21
2026.6	11				

자료: 국가보훈부

- 그간 과태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의 경우 2019년까지는 매년 6,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사실상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보훈특별고용은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한 기업체에 대해 적합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추천해 고용을 이행하게 하는 제도임.¹⁵⁾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취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취업지원 실시기관¹⁶⁾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고용하도록 되어 있음.

<보훈특별고용 업무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

구 분	독립 유공자	국 가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제 대 군 인*
본인	○	○	○	○	○	○	○
배우자	○	○	○	○	○	○	×
자녀	○	전몰·순직 군경자녀	×	×	사망·행불자 자녀	사망·행불자 자녀	×
		상이 6급 이상 자녀		장애 중등도 이상의 자녀	장해 11등급 이상의 자녀	상이 6급 이상의 자녀	
손자녀	○	×	×	×	×	×	×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복무)만 해당, 보훈특별고용·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은 적용되나, 가점은 미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이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실태 등의 확인·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⁷⁾

또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게 보훈특별고용을 명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의무고용 이행현황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이행률은 60% 초반에 그치고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민간기업 및 사립학교 또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의무고용 이행 현황>

(단위: %)

연 도	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2020	42.0	63.9	81.4	29.8	36.8
2021	41.4	64.9	80.2	29.2	36.2
2022	36.6	63.7	77.5	24.6	33.2
2023	36.2	62.5	77.3	24.0	31.8
2024	35.1	59.8	76.7	22.9	30.9
2025	34.3	61.4	76.4	22.0	29.4
2026.6	34.2	61.8	76.8	21.7	29.6

(자료: 국가보훈부)

<기관별 의무고용 이행 현황>

('26.6.30. 기준, 단위:명, %)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립학교
기관 업체 수	15,930	578	2,361	11,721	1,270
의무고용 산출인원	224,198	8,723	43,851	166,306	5,318
실제 고용인원	76,717	5,388	33,675	36,080	1,574
의무고용 이행률	34.2	61.8	76.8	21.7	29.6

* '국가기관등'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되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보훈특별고용 대상이 많은 우정직렬(집배, 계리직 등)의 비율이 높아, 우정직렬 제외 시 의무고용 이행률은 국가기관 전체는 89.1% 수준, 중앙행정기관은 116% 수준임.

(자료: 국가보훈부)

-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제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한편,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후 채용환경 변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최근 10년간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6.6						
2025	15	15	100.0			
2024	-	-	-	-	-	-
2023	-	-	-	-	-	-
2022	10	10	100.0	-	-	-
2021	-	-	-	-	-	-
2020	-	-	-	-	-	-
2019	95	95	100.0	-	-	-
2018	40	30	75.0	-	-	10
2017	70	55	78.6	-	-	15
2016	115	110	95.7	-	-	5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수납 징수 건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최근 5년간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취업지원 유형별 취업현황>

(단위: 건)

구분	합계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채용시험 가점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2022	7,203	1,381	5,526	296
2023	7,094	1,004	5,912	178
2024	7,284	1,056	6,056	172
2025	8,325	976	7,178	171
2026.7.	7,771	756	6,887	128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훈특별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기타경상이전수입¹⁹⁾: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과 연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5년에는 예산액 86억 5,200만원 중 66억 8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29억 8,100만원을 수납(수납률 45.1%)하였음.

< 2025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8,652	8,652	-	8,652	6,608	2,981	3,316	311	8,652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일반회계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해마다 수납액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임에도 2024년까지 꾸준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에도 수납률이 45.1%에 그침.

19) 세부사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본 사업은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0~2025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70% 미만 수준에 그쳤으며,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하였음. 2025년 수납률은 전년(예산액 기준 52.4%, 징수결정액 기준 55.1%)보다 저조하였음.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A)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징수결정액(B)	7,859	9,760	11,065	7,131	8,233	6,608
수납액(C)	4,231	3,454	5,430	2,111	4,537	2,981
수납률(C/A)	55.5	44.0	66.6	25.1	52.4	34.5
수납률(C/B)	53.8	35.4	49.1	29.6	55.1	45.1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5	보훈급여금 과오불	4,136	887	21.4	311	7.5	2,938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1,494	1,441	96.5	-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118	116	98.3	-	-	1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346	165	47.4	-	-	182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15	373	72.4	-	-	142
	계	6,608	2,981	45.1	311	4.7	3,316
2024	보훈급여금 과오불	4,100	949	23.1	141	3.4	3,009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963	2,910	98.2	0	-	53
	교육비지원과오불	76	73	95.7	0	-	3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542	206	37.9	0	-	336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51	399	72.4	0	-	152
	계	8,233	4,537	55.1	141	1.7	3,554

연도	구분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B)	불납 결손액 (D)	불납 결손율 (D/B)	미수납액 (E)
2023	보훈급여금 과오불	4,700	1,167	24.8	207	4.4	3,326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925	875	94.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33	127	95.5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729	206	28.3	0	-	523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644	446	69.3	0	-	198
	계	7,131	2,821	39.6	207	2.9	4,102
2022	보훈급여금 과오불	5,854	1,381	23.6	139	2.4	4,334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3,493	3,443	98.6	0	-	50
	교육비지원과오불	100	94	94.0	0	-	6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및이자	915	214	23.4	0	-	701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702	297	42.3	17	2.4	388
	계	11,065	5,430	49.1	156	1.4	5,479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20.2	189	3.2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78.9	0	-	445
	교육비지원과오불	153	134	87.6	0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1,083	206	19.0	0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9.5	4	4	268
	계	9,760	3,454	35.4	194	2.0	6,112

(자료: 국가보훈부)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금금은 수납률이 21.4%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29억 3,787만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47.4%, 미수납액은 1억 8,182만원에 달함.

< 연도별 보훈급여금 과오금금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 (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3,893	729	760	2,772	361	19.5
2019년	3,506	874	1,031	2,249	226	29.4
2020년	3,048	632	626	2,392	30	20.5
2021년	5,879	3,514	1,187	4,503	189	20.2
2022년	5,854	2,423	1,381	4,334	139	23.6
2023년	4,700	1,520	1,167	3,326	207	24.8
2024년	4,100	1,021	949	3,009	141	23.1
2025년	4,136	1,049	887	2,938	311	21.4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반납금 및 이자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징수 결정액(A)	당해연도 신규발생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2018년	958	500	-	958	-	-
2019년	1,011	54	38	973	-	3.8
2020년	1,031	58	-	1,031	-	-
2021년	1,083	52	206	877	-	19.0
2022년	915	384	214	701	-	23.4
2023년	723	22	206	517	-	28.3
2024년	543	26	206	336	-	37.9
2025년	346	11	165	182	-	47.4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수납액의 규모나 수납률에 관계없이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 규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왜곡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임의채납액의 채납기간별 현황을 보면 국가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한 장기채납액이 상당한 비중(30.3%)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채납된 채권은 불납결손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세입 누락으로 인한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²⁰⁾

<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임의채납액 채납기간별 현황 >

(단위: 백만원, %)

채납기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계
금액	268	27	46	73	125	306	845
비중	31.7	3.2	5.4	8.6	14.8	36.2	10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에서 최근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편성근거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으나,²¹⁾ 국가보훈부는 매년 ‘전년 대비 3% 증액 또는 전년과 동일’을 편성근거로 제출하고 있음.

- 수납액이 가장 많은 2022년에도 금액은 54억 3,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예산액은 2019년 73억 1,9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21) 2022~2024년 정부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

2024년에는 86억 5,200만원에 이르렀고, 2025년과 2026년 예산액은 2024년과 동일함.

<최근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및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A)	7,319	7,622	7,851	8,155	8,400	8,652	8,652
징수결정액(B)	6,046	7,859	9,760	11,065	7,131	8,233	6,608
수납액(C)	2,509	4,231	3,454	5,430	2,111	4,537	2,981
수납률(C/A)	34.3	55.5	44.0	66.6	25.1	52.4	33.4
수납률(C/B)	41.5	53.8	35.4	49.1	29.6	55.1	43.8

자료: 국가보훈부

- ☐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채납 감소를 통한 수납실적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채납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생활조정수당²²⁾: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추계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17억 400만원 중 1,015억 5,8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내역사업 “생활조정수당”과 내역사업 “생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내역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913억 4,000만원 중 912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80세 이상인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3억 5,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2) 세부사업: 생활조정수당(1133-302)

〈 2025회계연도 생활조정수당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생활조정수당	84,754	-	16,950	101,704	101,558	-	146	120,134
- 생활조정수당	80,512	-	10,837	91,340	91,203	-	146	80,513
- 생계지원금	4,242	-	6,113	10,355	10,355	-	-	39,621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사업 개요 〉

구분	대상	요건		지원금액		
생활 조정 수당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선순위 유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구분	기준 중위소득	월 지급액 (천원)
				3인 가구 이하	50% 이하	242
					40%이하	277
					32%이하	311
				4인 가구 이상	50% 이하	300
					40%이하	336
생계 지원금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80세 이상	매월 100천 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세부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의 2025년도 집행액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약 20% 초과한 1,015억 5,800만원으로, 이로 인하여 동 세부사업은 169억 5,000만원을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내역변경받게 되었음.

○ 내역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편성된 예산의 약 13.3%인 106억 9,100만원을 초과 집행하였고,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인 61억 1,300만원(약 144.1% 초과)을 초과 집행하였음.

〈 2025년 생활조정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차이 (A-B)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비고
생활조정수당	84,754	101,558	△16,804	119.8	타 세부사업(고엽제수당) 으로부터 169억 5,000 만원 내역변경
- 생활조정수당	80,512	91,203	△10,691	113.3	
- 생계지원금	4,242	10,355	△6,113	244.1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대규모의 초과 집행이 발생하게 된 것은 실제 지급인원이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추계된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임.

추계인원을 넘어서는 지급인원의 증가가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편성 당시 수행하였던 인원 추계 방식 자체의 오류 때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2025년 추계인원 및 지급인원 〉

(단위: 명)

구분	추계인원 (A)	지급인원 (B)	차이 (A-B)
생활조정수당	22,356	26,394	△4,038
생계지원금	3,535	8,629	△5,094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등 제도는 지급대상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2023년 이전에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요건 외에 ‘지급대상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2023년 중상이자 등을 대상으로 요건을 면제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이를 전체 보훈대상자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완전폐지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제도 변화 〉

구분	대 상		
	2023년	2024년	2025년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중상이자 등	65세 이상 노인	전체 보훈대상자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을 편성인원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원을 추계하거나, 제도 변화에 따른 인원 증가분은 반영하면서 제도 변화 외 증가하고 있던 지급인원의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계하는 등 편성인원 추계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역사업 “생계지원금”의 경우 2023년 실제 지급인원에 2023년 지급인원 증감률을 적용하여 2025년도 편성 인원을 추계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증가하게 되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인원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 증가 인원을 총 4,237명으로 추계하였고, 이를 각각 해당연도인 2023년·2024년 편성인원에 반영하였음.

그러나, 정작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증가 인원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방식인 2023년 지급인원을 기준으로 추계함으로써 결국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이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23년에는 중상이자 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되었지만,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의 대다수가 비상이자인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²³⁾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을 수 없고, 따라서 2023년 실제 지급인원 변동은 미미하였음.

- 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던 2024년에는 지급요건이 “80세 이상”인 생계지원금은 모든 지급

23) 2024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중 약 91%(6,244명), 2025년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중 약 87.6%(7,562명)가 참전유공자임.

대상자가 해당 제도 변화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급인원 증가분은 2024년에 집중하여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었음.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2025년 편성인원 추계 시 '22~'23년 증감률을 반영하는 추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2024년 변동 부분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되었음.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인원 증가 추계 〉

연도	폐지 대상	추계인원
2023년	중상이자 등	1,042명
2024년	65세 이상 노인	3,195명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	-
합계		4,237명

(자료: 국가보훈부)

〈 생계지원금 편성인원 추계 방식 〉

구분	편성인원	추계 방식	지급인원	
				전년 대비
2023년	6,770명	'22년 편성인원(5,728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1,042명)	3,505명	+15
2024년	9,965명	'23년 편성인원(6,770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3,195명)	6,863명	+3,358
2025년	3,535명	'22~'23년 증감률(0.4%) 반영 ('23년 지급인원 3,505명 $\times$ 1.004 $\times$ 1.004)	8,629명	+1,766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2025년 생계지원금 내역사업은 지급인원이 편성인원의 2배를 넘게 되었고, 예산액의 약 144%를 초과 집행하게 되었음.

□ 다음으로, ‘생활조정수당’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편성인원을 2024년 편성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2025년 지급인원 증가분을 더하여 추계하였음.

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23년부터의 추계까지 고려하여 보면, 결국 2025년 편성인원은 2021년 실제 지급인원에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증가 인원(2023년~2025년)을 모두 더한 값으로, 이는 제도 변화 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인원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증가를 총 10,299명으로 추계하였고, 각 해당 연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을 각 해당연도의 편성인원 추계 시 별도 가산하는 방식으로 편성인원에 반영하였음.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증가 추계 〉

연도	폐지 대상	추계 인원
2023년	중상이자 등	2,538명
2024년	65세 이상 노인	6,945명
2025년	전체 보훈대상자	816명
합계		10,299명

(자료: 국가보훈부)

〈 생활조정수당 편성인원 추계 방식 〉

구분	편성인원	추계 방식	지급인원	
				전년 대비
2023년	14,595명	'21년 지급인원(12,057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2,538명)	14,957명	+1,162
2024년	21,540명	'23년 편성인원(14,595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6,945명)	21,099명	+6,142
2025년	22,356명	'24년 편성인원(21,540명) +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인원(816명) = '21년 지급인원(12,057명) +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인원(10,299명)	26,394명	+5,29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는 이러한 제도 변화 이전에도 매년 실제 지급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어야 하지만, 2021년 지급인원에 제도 변화에 따른 증가분만을 가산함으로써 2021년 이후부터 증가한 제도 변화 외의 증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 변화 〉

(단위: 명)

구분	'18	'19	'20	'21	'22
지급인원	8,478	9,097	10,217	12,057	13,795
(전년대비)	+741	+619	+1,120	+1,840	+1,73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세부사업인 “생활조정수당”은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유형 및 특성, 지급인원 변동 추세, 관련 제도 신설 등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 내역사업의 2025년도 편성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의 초과 집행을 유발하였음.

□ 생활조정수당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잘못된 추계로 과소편성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부족분을 다른 사업의 예산에서 이·전용 등 하여 집행하거나 예비비를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상 비효율을 야기하게 되고, 예산 편성·심의 측면에서는 편성 당시 지출구조를 왜곡하여 배분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지급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추계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수당, 고엽제환자검진²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지연 방지를 위하여 고엽제환자검진 실적 개선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고엽제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162억 6,700만원 중 176억 5,000만원을 전용하고, 1조 5,102억 4,8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4%)하였으며, 1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고엽제환자검진”은 고엽제피해 질병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등 인정 여부 판정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26억 6,700만원 중 5억원을 전용하고, 21억 6,700만원을 집행(집행률 81.3%)하였음.

< 2025회계연도 고엽제수당, 고엽제환자검진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고엽제수당	316,267	-	△17,650	298,617	298,441	-	176	321,824
고엽제환자검진	2,667	-	△500	2,167	2,167	-	-	2,412

(자료: 국가보훈부)

24) 세부사업: 고엽제수당(1133-304), 고엽제환자검진(1143-368)

2) 검토의견

□ “고엽제수당” 사업의 2025년도 결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25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인원 미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근 6개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집행잔액(178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 또한 동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A-B)		
						이·전용등	불용액
2020	300,801	285,067	285,067	94.8	15,734	△15,734	-
2021	305,634	289,761	289,038	94.6	16,596	△15,873	723
2022	298,384	298,384	296,231	99.3	2,153	-	2,153
2023	310,694	305,721	304,727	98.1	5,967	△4,973	994
2024	309,760	309,760	307,480	99.3	2,280	-	2,280
2025	316,267	298,617	298,441	94.4	17,826	△17,650	176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고엽제수당 편성인원 대비 지급인원 〉

(단위: 명)

구분		편성인원	지급인원	인원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도	7,655	7436	219
	중등도	7018	6761	257
	경도	17108	16594	514
	합계	31,781	30,791	990
고엽제2세 환자	고도	11	11	-
	중등도	58	54	4
	경도	148	140	8
	합계	217	2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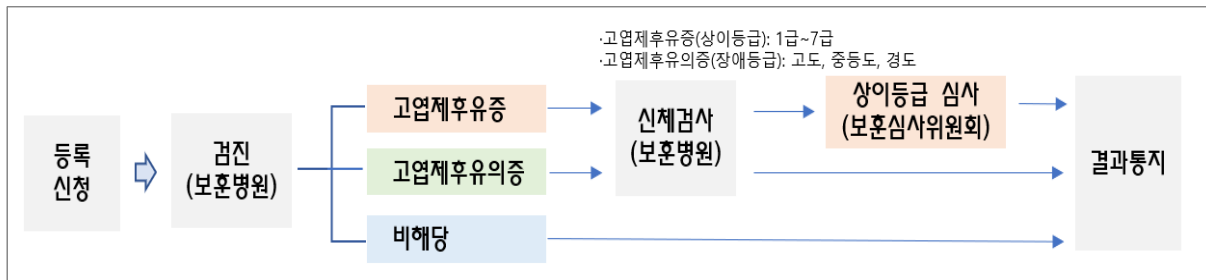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수당 지급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2024년부터 이어져 온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 “고엽제수당”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고, ②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경도 이상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함.

○ 따라서, 등록신청자에 대한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검진이 지연되는 경우 등록신청자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및 수당 지급도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절차 >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고엽제환자검진”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훈병원 전공의 부족 문제로 인하여 검진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였음.

○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검진 실적이 일부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정밀검진 및 입원 검진 등 고가의 검사 시행은 여전히 부진하였으며, 검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전년 대비 9일 증가한 57일로, 이는 보훈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검진이 축소되었던 2020년보다 긴 소요기간이라는 점에서 검진 절차 지연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A-B)		
					이·전용등	불용액	
2020	2,993	2,281	2,254	75.3	739	△712	27
2021	2,993	2,993	2,389	79.8	604	-	604
2022	2,993	2,993	2,297	76.7	696	-	696
2023	2,667	2,867	2,867		△200	200	-
2024	2,667	2,667	1,978	74.2	689	-	689
2025	2,667	2,167	2,167	81.3	500	△500	-

(자료: 국가보훈부)

〈 고엽제환자검진 인원당 검진단가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검진단가 (원)	92,318	98,447	99,000	102,351	102,271	67,092	74,654

(자료: 국가보훈부)

〈 단일 질환 기준 고엽제검진 소요기간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검진 소요기간*	39.8일	54.2일	42.3일	43.6일	43.1일	48일	57일
		(코로나로 인한 검진 축소)				(전공의 부족)	

*검진 소요기간: 검진신청일부터 검진일까지의 기간

(자료: 국가보훈부)

□ 이로 인하여 새롭게 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정도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규 등록 인원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전체 수당 지급대상 인원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 등록 인원²⁵⁾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고도	282	226	213	236	199	127
중등도	618	559	555	538	500	467
경도	841	770	667	797	838	665
계	1,741	1,555	1,435	1,571	1,537	1,259

(자료: 국가보훈부)

25) 등록인원 중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등급미달자는 제외한 수치임.

〈 최근 6개년(2020~2025) 고엽제수당 지급 인원 변동 〉

(단위: 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	36,439	△ 816	35,763	△ 676	35,093	△ 670	34,285	△ 808	33,067	△ 1,218	31,151	△ 2,276
고도	10,317	△ 679	9,831	△ 486	9,442	△ 389	8,991	△ 451	8,401	△ 590	7,436	△ 965
중등도	6,063	222	6,351	288	6,646	295	6,798	152	6,854	56	6,761	△ 93
경도	20,059	△ 359	19,581	△ 478	19,005	△ 576	18,496	△ 509	17,812	△ 684	16,954	△ 1,218

(자료: 국가보훈부)

□ 이처럼, 검진 지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지연은 고엽제 피해를 입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늦추게 된다는 점에서 검진 실적 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지원, 생계지원금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늦추게 되어,²⁶⁾ 그 지연된 기간만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검진 실적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 생계지원금,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해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료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등록 신청자에 대한 검진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검진 지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보훈심사위원회운영²⁷⁾: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은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등록요건 충족 및 상이의 정도 등을 판단하고, 관련 연구 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통하여 심사지원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16억 3,100만원 중 1억 1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15억 2,600만원을 집행(집행률 93.6%)하였으며,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보훈심사위원회운영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훈심사위원회운영	1,631	18	△101	1,548	1,526	-	22	1,598

(자료: 국가보훈부)

27) 세부사업: 보훈심사위원회운영(1142-327)

2) 검토의견

□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관계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임.

○ 국가보훈관계법률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등록신청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구분 판정하려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등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²⁸⁾

○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등록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행하는 등록 결정, 상이등급 판정 등의 행정처분은 그 실체적 내용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구조임.

□ 그런데, 최근 국가보훈부의 행정소송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가 패소하는 사건의 수 및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의 경우 패소 확정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한 49건, 패소율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11.9%로, 최근 5개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12. (생략)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 〉

(단위 : 건, %)

구 분		계	판 결			취하등	패소율
			소계	패소	승소		
2021	요건확인	253	166	20	146	87	7.9
	상이등급 등	168	104	11	93	64	6.5
	계	421	270	31	239	151	7.4
2022	요건확인	245	171	11	160	74	4.5
	상이등급 등	183	128	19	109	55	10.4
	계	428	299	30	269	129	7.0
2023	요건확인	238	194	15	179	44	6.3
	상이등급 등	181	123	19	104	58	10.5
	계	419	317	34	283	102	8.1
2024	요건확인	247	213	12	201	34	4.9
	상이등급 등	147	110	22	88	37	15.0
	계	394	323	34	289	71	8.6
2025	요건확인	255	219	23	196	36	9.0
	상이등급 등	156	128	26	102	28	16.7
	계	411	347	49	298	64	11.9

(자료: 국가보훈부)

〈 전년 대비 2025년 행정소송 패소사건 현황 〉

(단위 : 건, %, %p)

구 분	패소사건 수			패소율	
		전년대비			전년대비 증감
		증가 건수	증가율		
요건확인	23	+11	91.7	9.0	+4.1
상이등급 등	26	+4	18.2	16.7	+1.7
계	49	+15	44.1	11.9	+3.3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2026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를 보면, 2026년 5월 말 기준 패소율은 2025년보다 증가한 14.5%로, 이러한 패소사건의 급격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26년 행정소송 처리 결과 (2026. 5.말 기준) 〉

(단위 : 건, %, %p)

구 분	계	판 결			취하등	패소율	
		소계	패소	승소			전년 대비
요건확인	86	69	10	59	17	11.6	+2.6
상이등급 등	52	40	10	30	12	19.2	+2.5
계	138	109	20	89	29	14.5	+2.6

(자료: 국가보훈부)

□ 행정소송 패소사건 증가는, 국가재정 측면에서 불필요한 패소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장기간 소요되는 쟁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받았어야 할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오랫동안 지연당한 당사자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가보훈부는 패소사건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6,300만원 증가한 3억 200만원을 패소비용으로 지급하였음.

〈 최근 5개년(2021년~2025년) 패소 관련 지급 비용 등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급 건수	31	30	34	34	49
지급비용	260	261	220	239	302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2025년도 패소 확정 사건²⁹⁾ 기준 소송에 소요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약 35% 사건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야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패소 사건 소송 소요 기간 〉

소요 기간*	1년 이상 ~ 2년 이하	2년 이상~ 3년 이하	3년 이상 ~ 4년 이하	4년 이상 ~ 5년 이하
건 수	19건	12건	9건	8건
전체 사건 대비	39.6%	25%	18.75%	16.66%

* 처분일부터 판결이 확정된 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구분 심사, 보상심사 등과 관련하여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³⁰⁾ 국가보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공자 등록 등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일부 심사 건에 대하여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법원의 법해석 및 판단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지속적으로 괴리되는 경우 불필요한 법률쟁송이 증가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국가재정부담 증가와 보훈대상자의 권익 저해를 유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29)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소송에 대한 사건 1건을 제외한 48건에 대한 수치임.

30) 보훈심사위원회가 2025년 처리한 요건심사는 6,903건, 상이등급구분 심사는 12,369건, 보상심사는 746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반복되는 법원의 판결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의에 참고하는 등 심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교통시설이용지원³¹⁾: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교통시설이용지원”은 애국지사와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시설의 운임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100.0%)이 집행되고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교통시설이용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이용지원	10,729	10,729	533	-	11,262	11,258	-	4	21,776
- 민영버스	8,484	8,484	533	-	9,017	9,003	-	4	19,531
- 고속철도	2,163	2,163	-	-	2,163	2,163	-	-	2,163
- 내항여객선	82	82	-	-	82	92	-	-	82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민영버스 이용지원’은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의 시내버스와 시외·고속버스 이용 운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12억 6,200만원 중 112억 5,800만원이 집행되고 400만원은 불용되었음.

31) 세부사업: 교통시설이용지원(2139-318)

2) 검토의견

(1)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반복 발생 문제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2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³²⁾’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2023년부터는 교통시설이용지원 대상자가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용실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이용지원 금액 중 일부를 버스연합회에 정액으로 보조하던 방식에서 버스 이용금액 전액을 교통복지카드 주관사와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음.

□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³³⁾은 정액으로 보조하던 2022년의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옴에 따라 미지급금이 누적되면서 다음연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연도별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484	8,484 (전년 동)	8,484 (전년 동)	8,484 (전년 동)

(자료: 국가보훈부)

32)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신분 확인 후 버스를 이용했고, 교통복지카드가 도입된 지역에서도 서로 호환이 안돼 카드를 발급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였음.

33) 신용카드사와 정산하는 ‘시내버스 이용지원’ 예산과 버스연합회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예산임.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대신 납부한 ‘교통복지카드 사업 수행자³⁴⁾’에게 대납액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2025년 지급 대상액 227억 9,300만원(2023년, 2024년 미지급금 99억 2,600만원 + 2025년 발생 128억 6,700만원) 중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금액은 71억 9,000만원에 불과하여 누적된 미지급금 156억 3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연도별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당해연도 발생 지급의무	당해연도 보조금	당해연도 미지급금	누적 미지급금
2023년	11,154	7,137	4,017	4,017
2024년	13,088	7,179	5,909	9,926
2025년	12,867	7,190	5,677	15,603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전년도 미지급금을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³⁵⁾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저해함.

또한, 미지급금이 누적될 경우 대규모 재정이 일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등 재정운용상 부담을 초래하게 됨.

34) 2025년 기준 사업 수행자는 신한카드(주)임.

35)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실제로,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 편성 시 2023년과 2024년의 누적 미지급금인 99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2025년 예산 대비 110억 4,700만원(153.4%)을 증액 편성한 바 있음.

〈민영버스 이용지원 예산 산출 근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산출근거
시내버스	7,200	18,247	· 시내버스 미정산액 9,926백만원 ('23년 4,017백만원, '24년 5,909백만원) · 코로나 이후 운임실적 회복 등 반영 8,321백만원
시외·고속버스	1,284	1,284	· '23년 추계액 1,222백만원 + 요금인상 5% 반영
합 계	8,484	19,531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러나 2026년 예산에 2023년 및 2024년 미지급금 정산분만 반영되어 있어, 2025년에 발생한 미지급금인 56억 7,700만원은 2026년 지급분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정산하였고, 그 결과, 2026년 2월 기준 예산액의 96.3%인 175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누적 미지급금 및 2월까지의 지급금을 정산하였음.

- 그동안의 집행 규모를 고려하면 2026년에도 미지급금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국가보훈부는 연말까지 약 9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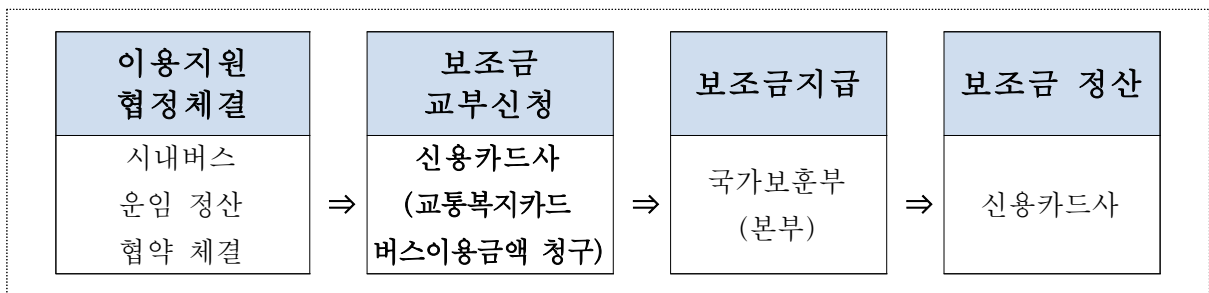
□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과 상이국가 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교통권 보장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임에도 ‘교통복지카드 사업수행자’의 대납액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보훈부는 시내버스 이용실적에 기반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민간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이용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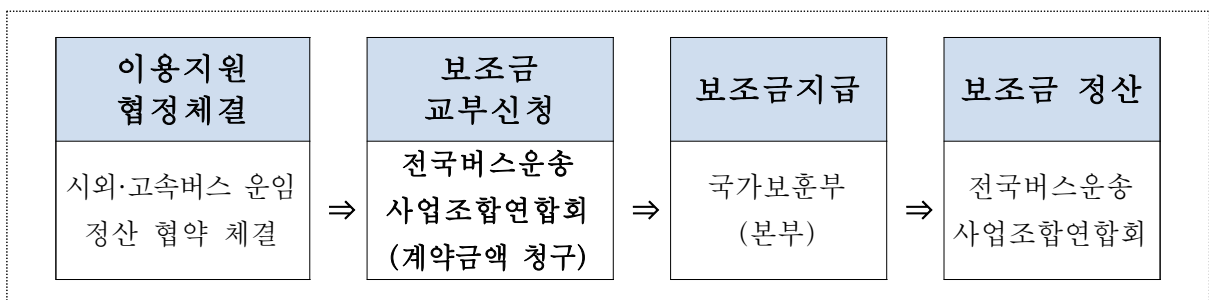
(2)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 사후정산 방식으로 개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2년까지 전국버스연합회와 시내버스, 시외·고속버스를 포함하여 할인이용 계약을 체결,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시행으로 시내버스는 신용카드사에 전액을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시외·고속버스는 현재까지 추계로 산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음.

〈시내버스 이용 지원 절차(신용카드사 정산)〉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절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산)〉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가보훈부는 비대면 승차권 발권 확대 및 무인 터미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시외·고속버스 무인발매기 및 할인 발권 전산 연계시스템 개발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표소에서 국가보훈등록증 확인 후 감면 혜택 적용을 받았으나, 매표소와 무인발매기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감면 혜택을 자동 적용받게 되었고, 이용 실적도 전산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그런데 전산을 통해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정산 방식을 시내버스와 같이 사후정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체 283개 터미널 중 245개 터미널은 전산망 연동으로 집계가 되나, 제3자 전산망³⁶⁾을 사용하는 38개 터미널³⁷⁾은 집계가 불가하기 때문임.

〈무인발매기 할인 발권 시스템 개발 전 · 후 비교〉

구 분	시스템 개발 전	시스템 개발 후
할인 발권	· 매표창구 직원이 신분증 확인 후 할인을 수기 선택	· 무인발매기 및 매표창구에서 보훈번호 입력으로 이용자 할인 대상 여부 및 할인을 확인
이용자 및 실적 집계	· 단순 할인발권으로 실제 이용자 및 실적 집계 불가	· 티머니·이동의즐거움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 이용자 실적 집계 가능 · 다만, 제3자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 집계 불가

36) 국가보훈부가 연계한 전산망은 ‘티머니’, ‘이동의 즐거움’ 2개 전산망으로, 그 외 전산망을 사용하는 터미널은 집계가 불가함.

37) 제3자 전산망 사용 터미널 현황(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자료)

구 분	터미널 명	개 수
특·광역시	인천 강화	1
경기	연천 전곡	1
강원	영월 상동, 평창 장평	2
충남	천안 성환	1
전북	고창 대산, 익산 금마, 임실 강진·관촌, 완주 고산·대둔산	6
경북	포항 기계·죽장, 안동 풍산·길안, 구미 해평·장천·도개·고아, 영천 신녕·고경·북안, 상주 화령, 의성 금성·안계·가음, 울진 삼근, 청송 부동·현동·부남·화북·월정·동곡, 청도 대천·운문사·청도,	25
경남	진주 반성, 산청 덕산	2
계		38

구 분	시스템 개발 전	시스템 개발 후
정산 방식	· 계약에 의한 정액 지급	· 모든 터미널이 티머니·이동의 즐거움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변경

(자료: 국가보훈부)

□ 무인발매기 및 현장 발권 전산 연계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발 완료되어 7월부터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 이에 따라 245개 터미널의 하반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 지원액은 총 4억 1,500만원으로 집계됨.

○ 245개 터미널의 6개월 실적으로 단순 계산하여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이용액을 추정하면 약 9억 5,900만원 수준으로, 이는 현재 계약 금액인 12억 8,400만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외·고속버스 이용 지원 현황(2025년 7~12월)〉

(단위: 회, 천원)

구 분	시외버스		고속버스		합계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7월	10,868	49,915	2,679	16,627	13,547	66,542
8월	11,053	50,713	2,719	16,985	13,772	67,698
9월	11,575	52,683	2,853	17,474	14,428	70,158
10월	11,013	50,457	2,317	15,815	13,330	66,272
11월	12,259	55,450	3,004	19,042	15,263	74,491
12월	11,319	52,112	2,878	17,963	14,197	70,075
계	68,087	311,330	16,450	103,906	84,537	415,236

* 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의 할인이용 내역은 미포함(38개소)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19년 117,716명→'25년 110,558명)에 있고, 전국버스연합회 측의 최근 감면 추계액 현황을 보아도 8억 5,000만원~6,000만원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민영버스 이용 지원 대상인원 및 감면 추계액〉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상인원*	시내버스 추계액	시외·고속버스 추계액**
2019년	117,716	18,262	1,336
2020년	116,931	13,360	722
2021년	115,789	14,354	663
2022년	114,398	13,440	705
2023년	112,066	11,154(실 집행액)	852 / 1,222(계약액)
2024년	110,604	13,088(실 집행액)	861 / 1,284(계약액)
2025년	110,558	12,867(실 집행액)	869 / 1,284(계약액)

* 전년 12월말 기준

** 추계액에는 제3자 전산망 운용 터미널 실적 미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물론, 245개 터미널의 6개월 이용 실적으로 전체 283개 터미널의 연간 실적을 추정하는 것은 엄밀한 정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버스업체가 손실을 감수하며 상이유공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무인발매기 및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대부분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원 대상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추계금액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 이용실적을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고속철도의 2025년 보조율이 31.5%에 불과(감면액 68억 7,700만원, 보조액 21억 6,300만원)하다는 점에서, 수송시설 간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이용실적 집계가 가능한 245개 터미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적 기반 정산을 도입하는 방안, 제3자 전산망 사용 38개 터미널과 전산연계 방안, 신용카드 기반 정산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⁸⁾.

38)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시외·고속버스 이용지원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버스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복지카드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내버스 요금 정산 방식과 달라 별도 정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5. 보훈병원 진료³⁹⁾ 및 위탁병원 진료⁴⁰⁾: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421억 3,8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의 진료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훈병원진료 및 위탁병원진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병원진료	392,296	442,138	-	-	442,138	442,138	-	-	450,483
- 보훈병원진료비	385,278	435,120	-	-	435,120	435,120	-	-	441,576
위탁병원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	269,486
- 위탁병원진료비	246,715	281,288	-	-	281,288	281,288	-	-	267,103

(자료: 국가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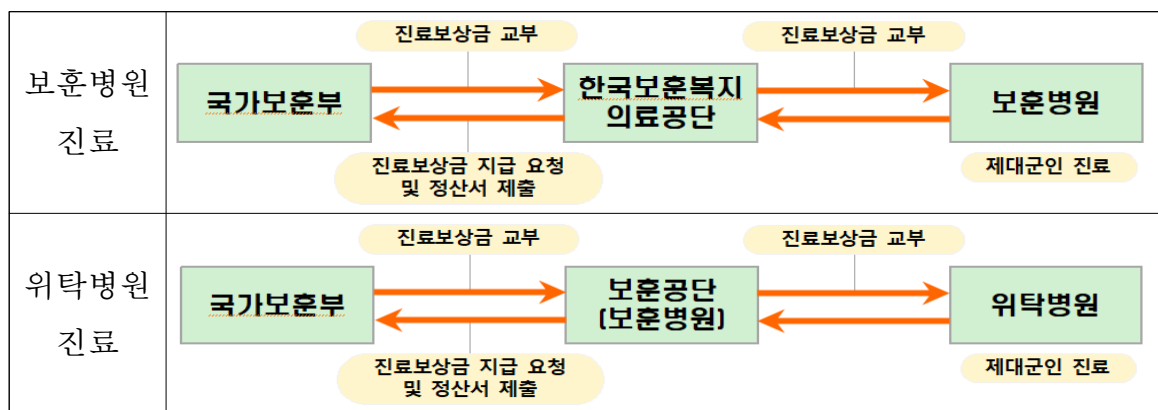
39)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40)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 내역사업인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351억 2,000만원, 2,812억 8,800만원이 각각 전액 집행되었음.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진료비를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진료비 정산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해서 기타 보전금(310-04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 사업 수행체계〉



2) 검토의견

□ 보훈의료 제공기관으로는 6개 보훈병원(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이 운영되고 있고,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전국 1,011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음.

-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적 희생이 있는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비 진료 대상자’와, 비상이 유공자 및 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부담하는 ‘감면 진료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체계〉

구분		의료기관	감면율
상이유공자 본인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100% *일정 등급 이하: 상이처 외 진료 시 90%
비상이 유공자 본인	참전유공자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90%
	재일학도의용군인		보훈병원 100%, 위탁병원 60%
	무공수훈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보국수훈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4·19혁명 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50%
	창군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 *독립유공자 배우자, (손자녀 등 유가족 전체	보훈병원	보훈병원 60% *기타5·18희생자 유가족 30%
	75세 이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보훈병원+위탁병원	보훈병원·위탁병원 6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병원 진료비와 위탁병원 진료비는 매년 예산액 대비 지급 필요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합리적·효율적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최근 5년간 예산 편성·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보훈병원진료 사업과 위탁병원진료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통한 충당이 이루어졌고, '21년 250억 3,400만원 → '23년 473억 3,100만원 → '24년 921억 3,100만원으로 이·전용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B)	예비비 (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본예산	추경(A)				
21년	보훈병원진료	385,503	385,503	9,508	-	395,011	395,011
	위탁병원진료	234,985	234,985	15,526	-	250,511	250,511
22년	보훈병원진료	385,475	385,475	△1,408	-	384,067	383,634
	위탁병원진료	252,556	252,556	-	-	252,556	249,484
23년	보훈병원진료	389,923	389,923	39,385	-	429,308	429,261
	위탁병원진료	267,441	267,441	7,946	-	275,387	275,385
24년	보훈병원진료	392,031	392,031	55,312	5,596*	452,939	452,939
	위탁병원진료	256,315	256,315	36,819	-	293,134	293,129
25년	보훈병원진료	392,296	442,138	-	-	442,138	442,138
	위탁병원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2024년에는 보훈병원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비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가 편성됨.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에는 보훈병원 진료비, 위탁병원 진료비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각각 12.9%, 14.0%씩 증액하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음.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비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보훈병원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385,278	435,120	49,842	12.9
위탁병원진료	위탁병원 진료비	246,715	281,288	34,573	14.0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이·전용 등을 통한 채원 충당 없이 예산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진료비 발생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진료비는 예산보다 1,138억 1,800만원(보훈병원 진료비 760억 8,9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377억 2,900만원)이 더 소요되었으나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액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유예하였기 때문임.

〈2025년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비 미지급금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지급필요액	예산액 (A)	이·전용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미지급금
보훈병원진료	511,209	435,120	-	435,120	435,120	76,089
위탁병원진료	319,017	281,288	-	281,288	281,288	37,729

(자료: 국가보훈부)

□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조정이 반복되고 2025년에는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전용 규모보다 큰 규모의 미지급금이 발

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를 과소 추계하였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2025년 예산 및 추경 편성시 보훈병원의 국비진료는 인원 2,344,883명과 단가 136,713원, 감면진료는 인원 1,336,985명과 단가 83,109원을 적용하였으나, 실제 지원은 국비진료(2,573,889명, 138,039원), 감면진료(1,454,575명, 106,637원) 모두 편성 기준을 상회하였음. 위탁병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원과 단가를 과소 추계하여 실제 지원 금액과 편차가 발생하였음.

〈2025년 보훈병원 · 위탁병원 진료비 편성 · 집행 비교〉

구분		예산		추경		실제 지원	
		금액 (백만원)	내용	금액 (백만원)	내용	금액 (백만원)	내용
보훈병원 진료비	국비	283,564	2,074,149명 ×136,713원	320,576	2,344,883명 ×136,713원	355,298	2,573,889명 ×138,039원
	감면	98,286	1,182,621명 ×83,109원	111,115	1,336,985명 ×83,109원	155,112	1,454,575명 ×106,637원
위탁병원 진료비	국비	225,596	2,856,629명 ×78,973원	256,306	3,245,489명 ×78,973원	259,539	3,077,848명 ×84,325원
	감면	28,367	1,098,595명 ×25,822원	32,230	1,248,160명 ×25,822원	54,068	1,713,502명 ×31,554원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미지급금과 관련하여, 재원이 부족하여 이·전용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미지급금 1,138억 1,800만원은 2026년 예산으로 정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미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⁴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이 다시 다음연도의 진료비 부족을 초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용 등 예산 조정을 거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안정적인 의료지원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둘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는 상황⁴²⁾에서, 보훈공단 자체 운영자금으로 진료비를 우선 지급한 후 국가보훈부가 차년도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은 보훈공단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실제 보훈공단은 2025년 연말 인건비 및 연차수당 지급 등을 위해 6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26년 국가보훈부의 미지급 진료비 정산 이후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대규모 미지급금이 공단의 단기 자금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⁴³⁾.

4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근 5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산	359,753	363,331	323,357	321,100	440,936
부채	88,981	88,449	129,350	207,664	351,076
부채비율 (부채/자산)	33%	32%	67%	183%	391%
영업이익	△86,336	△117,674	△76,383	△85,870	△46,044
당기순이익	△10,990	△41,973	△50,877	△47,172	△22,570

(자료: 국가보훈부)

43) 차입으로 인해 4,400만원의 이자비용도 발생하였음.

○ 셋째, 법정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예산조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국회 결산심사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2025년에는 예산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미지급금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의 의료지원 책임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 향후, 국가보훈부는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하여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운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6. 위탁병원 진료⁴⁴⁾: 위탁진료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사업의 실질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방식 정비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탁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위탁진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836억 8,6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병원 진료	249,113	283,686	-	-	283,686	283,686	-	-	269,486
-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	-	2,383	2,383	-	-	2,383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위탁진료관리비’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 소속 위탁병원관리단이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 심사·분석 및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3억 8,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44)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2) 검토의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등에서 국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986년부터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후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급증에 따른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11년 위탁병원 관리 전담조직 사업비(일반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보훈공단에 위탁진료관리를 위탁하는 위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전담조직인 ‘위탁병원관리단’이 출범하였음.

- 위탁병원관리단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⁴⁶⁾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28조⁴⁷⁾에 따라 위탁병원 관리

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4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41조(위탁병원의 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위탁병원의 진료가 적정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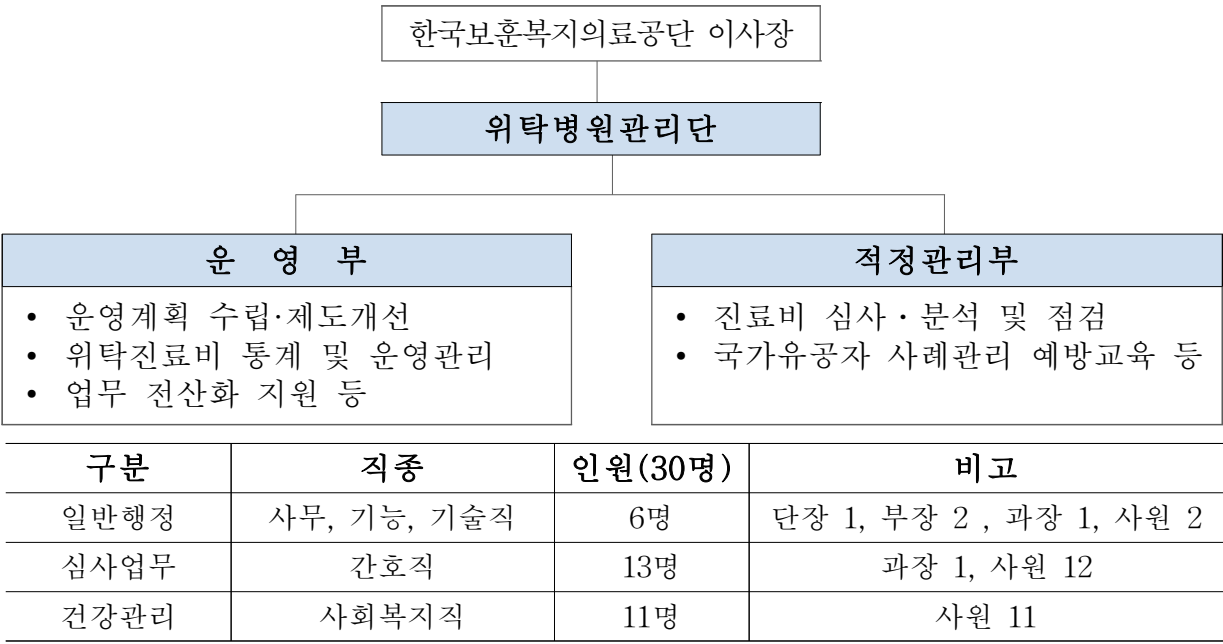
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정관」 제28조(소속기구) ① 공단의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 소속 하에 보훈 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가료대상자의 거주 분포 등을 감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보훈병원 건립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고, 보훈대상자 및 위탁병원의 적정 진료를 위해 위탁병원관리단을 둘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약정 체결 이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위탁병원관리단 조직도 및 인력현황〉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실질적으로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하여 보훈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로,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기는 경우 필요한 비용은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용역비의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민간위탁사업비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병원 관리 사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전문적인 일상 업무의 대행으로 보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사업의 법적 성격과 예산 집행의 정합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반 용역계약이 계약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두는 반면, 정부 위탁사업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행정사무의 수행이라는 공적 기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⁴⁸⁾.

-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⁴⁹⁾는 동법 제6조제11호⁵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하나로 위탁병원

48)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의 정부 위탁사업 수행 및 재위탁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p.4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공단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하 “진료기록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과 관련된 사업
2.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관리,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검진 및 장애등급 판정 사무

②·③ (생략)

관리 업무를 예시하는 등 위탁병원 관리업무를 보훈공단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으로 전제하고 있음. 또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위탁병원의 적정성 평가, 사례관리 및 현지 확인 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위탁진료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는 행정관리업무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용역 수행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 다음으로, 위탁병원관리단은 전국 위탁병원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면서 적정성 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해지를 건의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의료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⁵¹⁾.

이는 과업 수행 후 결과물을 제공받는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위탁진료 관리 기능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또한, 국가보훈부는 공단과 ‘용역계약’이 아닌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에서도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⁵²⁾,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여 보훈공단의 사무편람 작성, 국가보훈부의 지휘·감독 및 연례적 감사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³⁾.

5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51) 보훈공단 위탁병원관리단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참조

52)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예우법 제41조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전상군경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위탁병원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보훈공단에 위탁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 그럼에도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은 동 업무를 보훈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훈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체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동 규정은 보훈공단이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직접적인 사무 위탁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훈령)은 보훈공단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진료내역 심사·분석,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3) 「국가유공자 위탁진료관리 위탁약정서」 제6조(업무수행) ④ 보훈공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휘·감독) ① 국가보훈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를 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보훈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른 위탁병원관리단의 업무〉

1. 위탁병원의 진료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2.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병원 진료내역의 심사, 적정 진료 여부 분석 및 현지 출장 확인
4.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장기입원자 등의 사례관리와 건강증진 교육
5. 위탁병원진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병원의 진료에 대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 명확히 마련⁵⁴⁾하고, 실제 사업 운영방식과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집행방식을 정비하여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4) <유사 사업 위탁 규정 사례>

의료급여법	5조의2(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u>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 위탁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지원단 설치) 지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7. 보철구 지급⁵⁵⁾: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철구 지급”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해 주고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철구를 지급하거나, 보철용 차량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0억 2,600만원 중 58억 9,400만원(97.8%)이 집행되고 1억 3,2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철구 지급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철구 지급	6,026	6,026	-	-	6,026	5,894	-	132	6,026
- 보철구 지급 및 수리	5,845	5,845	-	-	5,845	5,845	-	-	5,845
- 보철구담당자 교육	6	6	-	-	6	6	-	-	6
-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175	175	-	-	175	43	-	132	175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인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의 신체 조건에 맞는 보조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편성·집행중이며, 1인당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음.

55) 세부사업: 보철구지급(2150-371)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 신체 장애가 있어 활동 제약이 따르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보조공학기기 장착, 적재공간 확대 등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 · 독립적으로 차량 운전(탑승)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1~5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등도, 고도)
내용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착 등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 시 <u>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u> ※ <u>최근 5년간 지원받은 경우 제외</u>
지원장비	· 핸드 컨트롤러, 오토박스, 휠체어 슬로프 등

(자료: 국가보훈부)

〈보철용 차량개조 주요 장비〉

구 분	내 용
좌측 엑셀 페달	· 지체장애 중 우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왼발로 엑셀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하는 개조용품
핸드 컨트롤러	· 지체장애 중 하지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손으로 차량의 엑셀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보조장치
오토박스	· 접이식 수동·전동 휠체어를 차량 루프에 설치된 박스에 수납하도록 하는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슬로프	·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별도의 보조장비 없이 저장화된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보조공학기기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23년 집행률 24.8%에 이어 2024년에도 집행률이 38.9%에 불과하였을 뿐 아니라, 2025년 집행률도 24.6%로 저조한 실정임.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에 사업 안내 협조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임.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내역사업 편성 및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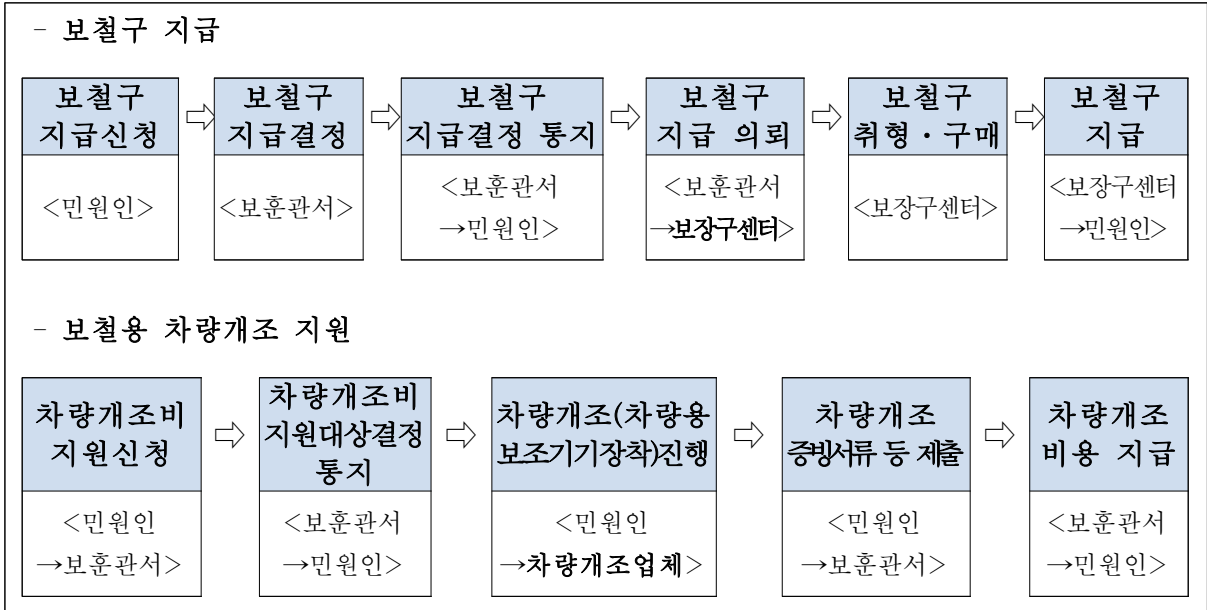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3년	250	62	24.8
2024년	175	68	38.9
2025년	175	43	24.6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보장구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보철구와 달리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직접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해 개조를 진행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상이 유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차량개조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 없이 집행률 제고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사업별 집행 절차〉



(자료: 국가보훈부)

- 유공자가 직접 민간 차량개조 업체를 선택하여 개조를 진행함에 따라, 동일한 개조 내역임에도 가격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바, ‘핸드 컨트롤러’의 경우 최대 가격과 최소 가격의 편차가 419만원(6.2배), ‘좌측 엑셀 페달’은 86만원(3.5배) 등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동일한 개조 내역별 가격 편차 현황〉

(단위: 만원)

개조 내용	최대 가격	최소 가격	가격 편차
좌측 엑셀 페달	121	35	86
핸드 컨트롤러	499	80	419
오토박스	855	759	96
휠 제어 슬로프	1,450	1,400	50

(자료: 국가보훈부)

□ 동일 개조 내역이라도 업체, 구동 방식, 제조국 등의 차이로 가격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체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제품의 사양·기능의 차이라면 상이등급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내용 확인 없이 1,500만원 한도 내에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임.

○ 본인부담금 없이 한도 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되는 구조인만큼 과다 비용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동일한 개조 내역에 6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6년 예산심사 당시 그동안의 지원 현황을 참고하여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한 보철용 차량 개조 품목의 업체 지정 또는 가격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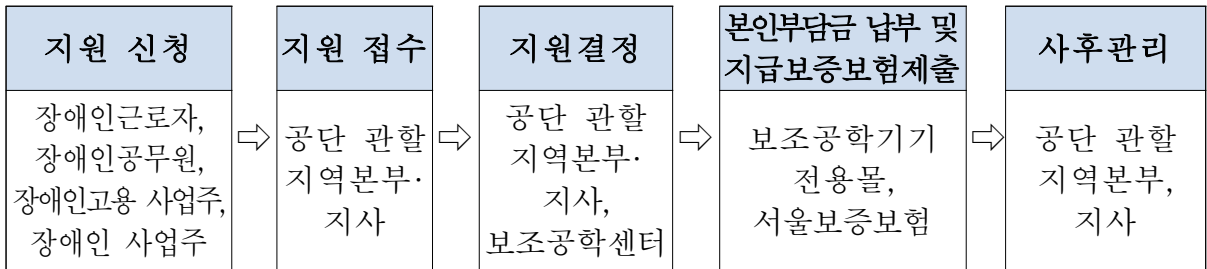
□ 유사 사업인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⁵⁶⁾’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지원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먼저, 보조공학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제품과 판매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 가격 협상 절차를 거쳐 단가가 확정되면 지원제품으로 등록함.

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20조~제24조,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평가를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에 맞는 지원 제품을 결정하며, 지원 결정금액의 최대 10% 본인 부담금을 결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공통요구자료 II-1)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단순 집행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보철용 차량개조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 집행 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8.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⁵⁷⁾: 사업관리 철저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은 대구보훈병원 건물의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서관동을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4,490	4,490	-	△4,190	300	300	-	-	6,221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대구보훈병원의 개원 후 30년 경과에 따른 건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총사업비 460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서관동을 철거한 후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07개 병상 규모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 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며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임.

57) 세부사업: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2156-393)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개원 후 30년 경과로 건물 노후화,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공간 협소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現 서관동 철거 후 증축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1,003㎡, 107개 병상 * 면적 8,823㎡ ↑ (2,180㎡→11,003㎡), 병상 19개 ↑ (88개→107개)
사업기간	· 2023년~2027년 → 2023년~2028년
총사업비	· 460억 7,000만원(국비 70%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 44억 9,000만원은 1차년도 공사비 소요액이 편성된 것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집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액의 93.3%인 41억 9,000만원을 제대군인 의료지원(2150-450) 사업으로 2025년 연말에 전용하였는바, 예산액 기준 집행률은 6.7%에 불과함.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예산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12.22)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개선 (2156-393)	320-07	4,190	제대군인 의료지원 (2150-450)	310-04	제대군인 의료지원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부)

- 예산액의 대부분이 전용된 사유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당초 2024년 설계를 마치고 2025년 3월 공사 계약 및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설계 지연으로 2025년 10월 설계가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공사 계약은 2026년에 이루어졌고, 공사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연말에 제대군인 의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전용하게 된 것임.

〈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사업 계획 대비 추진 현황〉

추진내용	당초 계획	추진 일정	지연 사유
▶ 사업계획 수립	2023년 3월	2023년 3월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설계 공모 등	2023년 4월 ~10월	2023년 7월 ~10월	
▶ 설계 실시	2023년 11월 ~2024년 12월	2023년 11월 ~2025년 10월	- 계획설계: 층별 부서 배치 확정 등 지연 - 중간설계: 공사비 조정, 조달청 적정성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등 - 실시설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추가실시, 설계기간 조정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체결	2025년 1월 ~2025년 3월	2026년 1월 ~2026년 4월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계약 및 입찰 검토
▶ 공사 실시	2025년 4월 ~2027년 3월	2026년 5월 ~2028년 6월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보훈부가 설계 지연 사유로 들고 있는 ‘층별 부서 배치 확정 지연’, ‘조달청 적정성 검토 등 행정 절차 지연’,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 실시’ 등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검증·조정되었어야 하나, 사전 준비 부족과 공정 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대구보훈병원 재건축 사업의 준공 시점이 2027년 3월에서 2028년 6월로 연기되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 개선이 늦어지게 되었고 예산도 대부분 전용 집행되어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음.

○ 둘째,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상황과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연말에 보조금 잔액 3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보조사업자의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⁵⁸⁾ 및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⁵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

5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59)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5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행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 27일에 사실상 보조금의 이월을 전제하고 교부하였는데,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사업이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현충시설건립⁶⁰⁾: 사업관리 철저 필요

1.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현충시설건립” 사업은 현충시설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4억 1,700만원 중 3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4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음.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독립의 전당” 건립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릴 위패봉안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9,900만 원을 집행(집행률 1.1%)하고 40억 3,200만 원을 이월함.

〈 2025년도 현충시설건립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 건립	4,756	4,756	100	△439	4,417	384	4,032	1	5,909
독립의 전당 건립	4,032	4,032	100	-	4,132	99	4,032	1	4,259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08년 기존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관의 ‘순국선열 위패봉안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60) 세부사업: 현충시설건립(3146-405)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6년 예산에 사업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었음.

그러나 당초 선정한 부지가 문화유산보호구역·공원 내에 위치하여 문화유산현상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편성된 예산 10억원과 20억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2018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 2025년에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완공 시기는 계속 늦춰지고 있음.

〈독립의 전당 사업 개요〉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위치 : 서대문독립공원 내(서대문구 현저동 101-407번지)
- 사업기간 : 2022~2027년(6년)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2,333㎡
- 주요시설 : 위패보관실, 체험학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13,348백만원(전액 국비)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도별 편성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구 분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예 산	집 행
금 액	226	152	494	373	4,146	45	4,032	99	4,259	384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도 예산 40억 3,200만원은 공사비 34억 400백만원, 감리비 6억 2,800만원으로 구성됨.

<2025년도 독립의 전당 내역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독립의 전당 건립 : 40억 3,200만원
 - (공사비) 1년차 공사비 34억 400만원
 - (감리비)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1년차 감리비 6억 2,800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독립의 전당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41억 3,200만원 중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9,900만원만 집행(집행률 2.4%)하였으며, 2026년은 7월 기준 예산현액 82억 9,100만원 중 공사비와 시설부대비 3억 8,400만원을 집행(집행률 4.6%)하였음.
-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9,900만원을 우선 집행하고, 본예산 40억 3,200만원은 전액 이월함.
- 2026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4,000만원 및 본예산 4,4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5)	4,032	100	-	4,132	99	4,032	1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0	-	20	20	-	-
- 실시설계비(420-02)	-	58	-	58	57	-	1
- 공사비(420-03)	3,404	-	-	3,404	-	3,404	-
- 감리비(420-04)	628	-	-	628	-	628	-
- 시설부대비(420-05)	-	22	-	22	22	-	-

(자료: 국가보훈부)

〈2026년도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집행 현황(6.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세목 조정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의 전당 건립(2026)	4,259	4,032	-	8,291	384		
- 공사비(420-03)	3,723	3,404	-	7,127	340		
- 감리비(420-04)	484	628	-	1,112	27		
- 시설부대비(420-05)	52	-	-	52	17		

(자료: 국가보훈부)

〈2022~2026년도 독립의 전당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226	-	-	226	152	69	5	67.3
2023	494	69	-	562	421	49	93	74.9
2024	4,146	49	-	4,195	45	100	4,050	1.1
2025	4,032	100	-	4,132	99	4,032	1	2.4
2026	4,259	4,032	-	8,291	384			4.6

1) 2026년도의 경우 6.30일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공원조성계획 심의, 서울시와의 사업부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실시계획인가 의견 조회 기간 등이 소요되어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2023년 8월), 국가보훈부는 2023년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를 2개년(2024~2025년)에 걸쳐 편성하였음.

2024년 11월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가보훈부는 2024년 9월 문화유산위원회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허가가 결정되었고, 독립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관련 주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2024년 11월까지 인·허가 관련 최종 조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 관련 계약을 2024년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당초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 공사비 및 감리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합계
공사비	3,404	6,056	9,460
감리비	638	958	1,596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예산액 41억 4,6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2024년 내에 집행하고, 21억 7,300만원은 이월하며 5억 500만원을 불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연내 착공 및 선금 지급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2025년의 경우 연차계약 2년차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밝힌 바와 달리 서울시와 사업부지 교환 관련 협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는 2025년 3월까지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5년 3월에 이르러서야 서울시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음.

당초 2023년 12월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실시설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및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거쳐 2025년 9월에야 완료되었고, 2024년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공사계약 체결 절차 또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면서 공사비와 감리비를 집행할 수 없었음.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3개년(2025년~2027년)에 걸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

<국가보훈부의 완공예정시점까지 연도별 예산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공사비	3,404	3,723	3,723
감리비	628	484	484
시설부대비	-	52	53
소 계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6년 6월이 되어서야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7월 기준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착수하고 있지 못함.
- 국가보훈부는 조속한 본공사 착공을 통해 2027년 9월까지 준공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에도 수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국가보훈부가 밝힌 일정을 전혀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준공 시기가 2028년 이후로 재차 연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예산 이월액을 선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면 2026년 예산은 공정률에 따라 이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독립의 전당 공정 과정별 계획 및 현황 >

구분	계획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일정 지연 사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2022.6.	2022.6.	-
공공건축 심의	2022.9.	2022.8.	-
설계용역 계약	2022.12.	2022.12.	-
계획설계 완료	2022.3.	2023.4.	-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2023.6.	2023.6. 2024.9	'23.6 최초 허가를 받았으나 공원조성 계획 심의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24.9 재허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2023.10.	2024.8.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심의 의견 (공원과의 조화, 경관 보존 등) 보완에 따른 심의기간 소요
실시설계 완료	2023.12.	2025.9.	부지 교환(보훈부-서울시) 서울시의회 의결,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의견(서대문구) 보완기간 소요
공사 계약 체결	2024.3.	2025.12.	선행절차 지연에 따른 순연 및 기존 건물(독립관) 해체심의 기간 소요 * '26.6월 현재 해체공사 중
착공	2024 상반기	2026.6.	
준공(예정)	2025.12.	2027.9.	

(자료: 국가보훈부)

<독립의 전당 연차별 재정 투입 계획 및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최초 계획 수립	11,900	226	494	4,526	6,654	-	-
계획 변경	13,348	226	491	80	4,032	4,259	4,260

(자료: 국가보훈부)

□ 2025년 국가보훈부의 예산 편성은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이월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당초 소요 대비 공사비를 축소하여 반영할 것을 규정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이었으며, 2025회계연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도 “사업의 지연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 지적한 바 있음.⁶¹⁾

□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근본적인 사유는 국가보훈부의 사전 사업계획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독립의전당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공사기간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61) 정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p.126

10. 현충시설관리⁶²⁾: 집행 부진 추세를 감안한 예산 조정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내역사업인 “현충시설 관리·운영사업”은 현충시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외 현충시설 등 실태조사,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 현충시설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국가보훈광장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7억 1,500만원으로 이 중 6억 9,200만원(96.5%)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용역비 낙찰차액 등 포함)

○ 동 내역사업에는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지원’ 내내역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이 중 1억 6,900만원(85.3%)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2,900만원은 현충시설 관리 운영 비용으로 집행하였음.

〈2025년도 현충시설관리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예산 증 0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2025년 0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현충시설관리	6,944	6,944	737	△2	7,679	5,573	2,067	39	10,839
현충시설 관리운영	717	717	-	△2	715	692 [692]	-	23	917
현충시설 지킴이운영	198	198	-	-	198	198 [198]	-	-	198

(자료: 국가보훈부)

62) 세부사업: 현충시설관리(3146-406)

2) 검토의견

- “현충시설 지킴이 운영” 사업은 소규모 현충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인근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등을 현충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현충시설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현충시설 지킴이가 월 1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관리상태 확인, 참배안내 및 청소 등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안내판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대상 시설은 ① 소유·관리자가 기념사업회·문중·개인 등인 소규모 시설, ② 외진 곳 소재, 언론 등에서 관리 부실 등으로 지적된 시설, ③ 기타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으로 보훈관서장이 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이며, 회당 5만원, 연간 12회까지로 시설당 연 6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함.
- 동 사업의 실적 및 예산액·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지급 실적 및 집행액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대상 시설의 경우 2021년 400개소에서 2022년·2023년 287개소, 2024년 286개소, 2025년 281개소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행액 또한 2021년 2억 4,000만원에서 2022년·2023년 1억 7,220만원, 2024년 1억 7,160만원, 2025년 1억 6,860만원으로 줄어들었음.
- 대상 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2021년 전까지는 지역별 안배, 선정기준 등 세부 지침이 없어 현충시설 대

비 지킴이 선정 비율에 불균형⁶³⁾이 나타났으나, 2022년부터는 지방 보훈관서별 선정비율을 18% 이내로 선정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균형있는 사업개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⁶⁴⁾.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비 지급 실적(최근 5년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시설 수(개소)	월 수당
2021년	240,000	240,000	400	50
2022년	240,000	172,200	287	50
2023년	240,000	172,200	287	50
2024년	240,000	171,600	286	50
2025년	198,000	168,600	281	50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매년 관리 취약 현충시설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매년 동 내내역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에 지원 현충시설 330개소를 전제로 2025년도와 동일한 규모를 편성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내내역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계획 대비 추진 가능성에 따른 적정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63) 지방 보훈관서별 현충시설 대비 지킴이 선정 비율 불균형(최소1.4%~ 최대41%)이 발생한 바 있음.

64) 국가보훈부는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추가 대상 시설 발굴에 일부 한계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은 관리 취약시설을 추가로 발굴하여 330개소에 정상적으로 예산(198백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11. 보훈기념행사⁶⁵⁾: 연례적인 세목조정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기념행사” 사업은 정부기념행사, 국경일행사 지원, 정부기념일 계기행사 지원 및 순직경찰·소방공무원 추모행사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39억 5,400만원 중 39억 4,700만원(99.8%)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정부기념일행사” 사업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11개 정부기념식 추진을 통해 국가기념일에 담긴 정신을 국민에 알리고 계승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9억 6,700만원 중 29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25년도 보훈기념행사 사업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보훈기념행사	3,954	3,954	-	-	3,954	3,947	-	7	4,254
정부기념일행사	2,967	2,967	-	81 △81	2,967	2,964 [2,964]	-	3	3,067

자료: 국가보훈부

65) 세부사업: 보훈기념행사(3147-411)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2022년 이·전용 등 18회, 2023년 이·전용 등 21회, 2024년 이·전용 등 15회 등 연례적으로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에서 잦은 이·전용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또는 임차료)로 세목조정을 했음에도 다시 일반용역비(또는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 등으로 세목조정을 하는 등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2025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 천 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5.2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6.2.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24.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90	
11.2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7,4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400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0	
12.1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8,2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8,230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4,94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54,948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8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3,800	

자료: 국가보훈부

< 2024년 정부기념행사 내역사업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일자	구분	이전용 등 감액(A)			이전용 등 증액(B)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목 (000-00)	금액	
1.2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000	예산의 효율적 집행
1.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6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60,000	
4.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55,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55,000	
5.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27,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000	
5.3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200	
6.5.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0	
6.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63,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3,000	
8.6.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1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00	
8.1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50,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0,000	
8.29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용역비 (210-14)	△116,108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16,108	
10.4.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7,66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660	
12.11.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	
12.1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2,0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000	
12.23	세목조정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임차료 (210-07)	△3,0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03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특근매식비 (210-05)	△3,941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941	
12.23.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70,0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70,039	
12.23.	전용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국외여비 (220-02)	△27,374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27,374	
12.23.	전용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국내여비 (220-01)	△15,453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15,453	
12.26	전용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국내여비 (220-01)	△3,26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3,269	
12.26	전용	보훈문화콘텐츠제작 및지원	일반용역비 (210-14)	△99,700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99,700	
12.26.	내역변경	독립운동관련사업등 지원	일반수용비 (210-01)	△69,239	보훈기념행사 -정부기념행사	일반수용비 (210-01)	69,239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비계획적인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충당한 것은 그 규모가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금액을 살펴보면 동일한 행사 내에서도 연도별 집행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념식 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매뉴얼이 부재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1~2025년 정부기념행사별 일반수용비 집행액 현황 >

(단위: 천원)

행사명	2021	2022	2023	2024	2025
2·28민주운동 기념식	51,660	28,372	23,655	39,923	2,500
3·8민주의거 기념식	15,880	32,025	14,450	30,726	2,400
3·15의거 기념식	14,956	56,134	40,164	48,666	2,800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87,625	68,022	45,690	62,378	9,200
4·19혁명 기념식	31,286	29,434	41,250	30,230	51,626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	-	-	171,472	1,200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46,148	125,925	123,700	102,210	57,138
현충일 추념식	25,816	89,995	80,508	104,150	133,200
6·10만세운동 기념식	23,479	27,200	43,784	43,522	9,500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29,750	4,032	5,398	31,300	12,965
순국선열의날 기념식	65,747	3,847	15,258	43,123	56,35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사전에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과도한 비목간 세목조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12. 호국보훈의달행사⁶⁶⁾: 적정 비목 편성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 “호국보훈의달행사” 사업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의식을 전 국민에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억 2,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호국보훈의달행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호국보훈의달행사	1,130	1,130	-	△7	1,123	1,123	-	-	1,008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호국보훈의 달 홍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소속기관 행사, 보훈의 상징 달기,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로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등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음.

- ☐ 동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는 일반용역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내역사업별로 일반수용비를 일반용

66) 세부사업: 호국보훈의달행사(3147-412)

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해옴에 따라, 2023년에는 ‘호국보훈의 달 홍보’ 내역사업에 일반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금액은 2025년 및 2026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 홍보” 내역사업을 제외한 다른 내역사업은 일반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및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의 경우 매년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반해, “보훈의 상징 달기” 및 “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등” 내역사업은 2023년까지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세목조정 없이 일반수용비로만 집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일반용역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본예산	집행액	
호국보훈의 달 홍보	-	-	-	99	150	140	150	152	150	150	150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	21	-	31	-	30	-	30	-	30	-
소속기관 행사	-	65	-	45	-	36	-	41	-	41	-
보훈의 상징 달기	-	-	-	15	-	22	-	-	-	-	-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	4	-	9	-	9	-	-	-	-	-
소 계	-	90	-	199	150	237	150	223	150	221	

(자료: 국가보훈부)

〈최근 4년간 내역사업별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의 예산액·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안)
		본 예 산	예 산 현 액	본 예 산	예 산 현 액	본 예 산	예 산 현 액	본 예 산	예 산 현 액	
호국보훈의 달 홍보	일반수용비	288	189	145	155	145	127	145	145	145
	일반용역비	-	99	150	140	150	168	150	150	150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	일반수용비	49	18	49	19	49	19	49	19	49
	일반용역비	-	31	-	30	-	30	-	30	-
소속기관 행사	일반수용비	666	621	666	629	635	594	542	501	486
	일반용역비	-	45	-	36	-	41	-	41	-
보훈의 상징 달기	일반수용비	107	92	107	85	102	102	87	87	75
	일반용역비	-	15	-	22	-	-	-	-	-
기타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72	63	72	63	65	65	47	47	47
	일반용역비	-	9	-	9	-	-	-	-	-
계	일반수용비	1,182	983	1,039	951	996	907	870	799	802
	일반용역비	-	199	150	237	150	239	150	221	150

(자료: 국가보훈부)

□ 내역사업별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내역사업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및 위로 격려 행사” 대행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은 일부 지방청이 일반용역비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일반용역비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 소속기관 행사 내역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매년 세목조정

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보임.

또한, 지방청 또는 지청마다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행사를 다른
목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일반용역비의 집행이 예상되는 "모범 국가보훈대
상자 등 포상" 내역사업의 경우 일반용역비를 적정 수준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속기관 행사" 내역사업은 전국 지방청 및 지
청에 집행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불필요
한 세목조정이 행해지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음.

13.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⁶⁷⁾: 신규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전문사료 발굴분석단을 운영하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미등록 참전유공자 등을 발굴·등록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17억 9,500만원 중 1억원을 이용하고, 16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률 90.3%)하였으며, 7,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독립유공자등 발굴포상	1,795	-	△100	1,695	1,621	-	74	2,615

(자료: 국가보훈부)

67)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3248-345)

2) 검토의견

-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의 내내역사업인 “참전유공자 역사찾기”⁶⁸⁾는 공훈전자사료관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역사찾기’ 메뉴를 추가하고 해당 시스템에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개인별 공훈록을 게시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으로, 2024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4년에는 공훈전자사료관 시스템 내에 6·25참전유공자의 공훈록을 게시하고 관련 훈장·유품 등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에는 구축된 시스템에 탑재할 공훈록을 자체 서술 또는 위탁 집필하려는 계획이었음.
-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액 1억원을, 2025년에는 공훈록 위탁 집필을 위한 예산액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24년에는 편성된 예산액 1억원 중 9,450만 원을 집행하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25년에는 공훈록 집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전액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용하였음.

〈 참전유공자 역사 찾기 사업계획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계획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2024	시스템 구축	100	94.5	94.5	5.5 불용
2025	공훈록 집필	100	-	0	타 세부사업 이용

(자료: 국가보훈부)

68) 세부사업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의 내역사업인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의 내내역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공훈록 수록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임.

○ 기존에 국가보훈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인 2025년부터 해당 시스템에 탑재할 공훈록을 작성할 계획이었고, 공훈록 작성 대상 52만여 명 중 약 47만 6천여 명은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몰자 공훈록을 연계 표출하거나 기발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훈록을 자체 서술하고, 무공수훈자 4만 4천여 명에 대한 공훈록은 전문업체에 위탁 집필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위탁 집필 예정이었던 무공수훈자 공훈록의 경우, 공적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부재하여 일반참전자와 동일하게 자체 서술로 변경함에 따라 위탁 집필 예산 전액을 불용하게 되었음.

< 2025년 참전유공자 공훈록 작성 방식 계획 >

구분	인원	공훈록 작성 방식
전몰군경	10.6만명	군사편찬연구소의 전몰자 공훈록 연계 표출
전공상군경, 일반참전자	37만명	통합보훈시스템, 병적DB시스템 등 기발굴 데이터 활용 자체 서술
무공수훈자	4.4만명	전문업체 위탁 집필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무공수훈자에 대한 공적 정보 부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정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전 조사 및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이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⁶⁹⁾: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등 장례 지원,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4억 8,400만원 중 2억 6,8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58억 4,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0.2%)하였으며, 3억 6,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는 국가관리묘역 관리 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액 17억 9,500만원 중 7,000만원을 이·전용 등하고, 14억 4,600만원을 집행(집행률 80.5%)하였으며, 2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6,484	-	△268	6,216	5,847	-	369	6,554
-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1,795	-	△70	1,725	1,446	-	279	2,028

(자료: 국가보훈부)

69)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3248-415)

2)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외 묘소관리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에 대하여 묘비 제작비, 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안장시설 사용료·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개요 〉

■ 지원 대상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지원 금액	기당 1백만원 이내 실비 정산 - (묘) 묘비제작비, 묘지 사용료 관리비 등 - (봉안장, 봉안담, 자연장 등) 사용료, 관리비, 표지석 설치비, 유골함 구입비 등
■ 지원 절차 및 방법	유족 신청 (묘비 설치 또는 시설 안장 후 5년 이내) → 관할 보훈관서 지급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은 2022년까지는 국립묘지 외의 묘에 안장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묘비 제작비(비석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봉안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방향⁷⁰⁾과 장묘문화 흐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묘 이외의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안장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음.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3년 동 사업의 지급대상 인원을 국립묘지 외 안장자 수의 5개년('17년~'21년) 평균 인원인 645명으로 추계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음.

〈 국립묘지 외 안장인원 현황 〉

(단위: 명)

구분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5개년 평균
사 망(A)	7,836	7,595	7,157	5,629	5,495	6,742
국립묘지 안장(B)	7,262	6,862	6,302	5,085	4,977	6,097
국립묘지 외 안장(A-B)	574	733	855	544	518	645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 2023년부터 계획보다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였고, 2025년은 이러한 집행 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을 축소시켰음에도 집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	67	62	92.5
2022	67	52	77.6
2023	645	214	33.2
2024	675	418	61.9
2025	498	313	62.8
2026 (6월 말 기준)	390	128.5	32.9

(자료: 국가보훈부)

□ 이는, 사업계획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던 2023년 당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을 과다하게 예측하였고, 사업집행 측면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사업계획 측면에서, 동 사업은 지원 예상 인원인 국립묘지 외 안장 인원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사망 인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원을 차감한 인원’으로 계산하였음.

그러나, 추계에 사용된 기간에는 국립이천호국원과 국립괴산호국원에서 안장이 실시되지 않았고(국립괴산호국원의 경우 2018년까지 미안장)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2021년 개원)하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인원이 과소 측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인원이 실제 인원보다 과다 추계되었던 것으로 보임.

- 실제 동 사업의 지원인원은 매년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다 추계는 집행실적 부진을 감안하여 계획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묘비제작비 및 안장시설 사용료 지급 사업 계획인원 및 지원인원 〉

(단위: 명, %)

연도	계획인원	지원인원	편성인원 대비 지원인원
2021	167	158	94.6
2022	167	130	77.8
2023	645	324	50.2
2024	675	489	72.4
2025	498	325	65.2
2026 (6월 말 기준)	390	142	36.4

(자료: 국가보훈부)

○ 사업집행 측면에서, 동 사업은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인원이 모두 지원을 신청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였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수혜 대상자인 유족 등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이 2023년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는 유족 등이 동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신청이 저조하였다는 의견임.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동 지원사업 외에도 보훈대상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는 사업⁷¹⁾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 집행 과정에서 동 지원사업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안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하여, 지원 대상 인원을 재산정하여 과다 추계를 해소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1) * 영구용 태극기 증정 사업: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입관 후 사용할 영구용 태극기를 장례 시 직접 전달하는 사업(2025년도 예산 216백만원)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사업: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빈소 내에 설치할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전달하는 사업(2025년도 예산 75백만원)

15.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⁷²⁾: 편성목적 및 비목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은 국립묘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현충선양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국립묘지 관리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억 7,500만원 중 33억 1,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8.2%)하고,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선양”은 국립묘지에서 다양한 현충선양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6억 8,9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4%)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	937	2,638	△200	3,375	3,315	-	60	1,286
- 국립묘지선양	889	-	△200	689	685	-	4	950
- 국립묘지관리	48	2,638	-	2,686	2,630	-	56	336

(자료: 국가보훈부)

72) 세부사업: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3250-352)

2) 검토의견

- “국립묘지 현충선양활동”의 내역사업인 “국립묘지 선양”의 2025년 예산 편성 근거를 살펴보면, 동 내역사업은 톨콜 및 나라사랑 사진전, 국립묘지 묘전 태극기 구매, 국립묘지 호국음학회 등 각 국립묘지에서 실시하는 현충선양활동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국립묘지 선양 사업의 2025년 예산 편성 근거 〉

사업	편성 근거
톨콜 및 나라사랑 사진전 등	- 안장자 톨콜 및 부대행사 : 220백만원 (11개소×20백만원) - 나라사랑 사진전 : 80백만원(11개소×7.3백만원)
국립묘지 묘전태극기	국립묘지 묘전태극기 구매 : 159백만원
국립묘지 호국음학회 등	- 국립묘지 호국음학회 등 공연 : 330백만원(11개소×30백만원) - 홍보영상 등 콘텐츠 제작 : 100백만원(11개소×9.1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각 국립묘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각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어야 할 운영·관리적 성격의 지출을 동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됨.

〈 국립묘지 선양 사업 중 국립묘지 운영·관리 성격 지출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집행 내용	집행액
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지반조사 비용	2,200
국립영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 용역	20,000
	추석 명절 일용인부 용역대금	2,156
국립이천호국원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	20,000
계		44,356

(자료: 국가보훈부)

- 묘역 지반조사 비용, 일용인부 용역 대금 등은 선양 활동보다 국립묘지 운영·관리를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각 세부사업⁷³⁾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어야 함.
- 또한, 국립묘지 묘역 확충공사 사업 예산은 각 국립묘지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공사 준공식의 경우 묘역확충사업의 건설비 중 시설부대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할 때, 묘역확충공사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은 각 국립묘지의 세부사업 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임.
- 국립묘지 확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곳에서 실시된 묘역확충 관련 준공식 중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의 경우에는 해당 국립묘지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음.

73)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국립4·19묘지(3250-354), 국립5·18묘지(3250-356),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 한편, 국립이천호국원의 경우 묘역 확충공사 준공식과 관련하여, 동 내역사업에서 2,000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 국립이천호국원 (3250-360)에서 3,500만원을 별도로 집행하여,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국립이천호국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과 혼용하여 집행하였음.

○ 그럼에도 각 국립묘지는 동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 등 별도의 집행상 조치없이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하고 있음.

□ 또한, 동 내역사업은 편성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비일관적인 집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집행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내역사업에서 지출된 국립묘지 노무 관련 자문에 대한 자문료의 경우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전문가 자문료)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용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고, 호국원 준공식 행사 관련 계약의 경우, 행사용역을 대행시키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일반용역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례가 있음.

- 특히 위 사례들은 동 내역사업 내에서도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사례가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역사업 내에서조차 일관된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무 자문료 및 호국원 준공식 행사 관련 지급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비목	집행액	비고
노무 자문료 지급(1분기)	일반수용비	3,300	노무법인 △△
노무 자문료 지급(2분기)	일반수용비	3,300	
노무 자문료 지급(3분기)	일반용역비	3,300	
노무 자문료 지급(4분기)	일반용역비	3,300	
국립영천호국원 준공식 행사용역	일반용역비	20,000	■ ■ ■ ■
국립이천호국원 준공식 행사용역 대금	일반수용비	20,000	주식회사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국립묘지선양” 사업의 경우 “국립묘지관리” 사업 성격의 예산으로 지출하거나 편성된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동일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6. 국립이천호국원⁷⁴⁾: 이장 대기인원 해소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이천호국원”은 국립이천호국원의 시설 및 묘역을 관리하고, 봉안당 확충, 현충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222억 3,900만원 중 219억 2,100만원을 집행 (집행률 98.6%)하고, 3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이천호국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이천호국원	20,857	22,938	50	△749	22,239	21,921	-	318	5,443

(자료: 국가보훈부)

74) 세부사업: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2) 검토의견

- 국립이천호국원은 2008년 개원하여 2017년 4월 만장(50,000기)되었음.
이에, 국립이천호국원은 2018년부터 안장시설 약 50,000기를 확충하기
위한 봉안당 확충사업을 시작하였고, 해당 확충공사는 2025년 1월
준공을 완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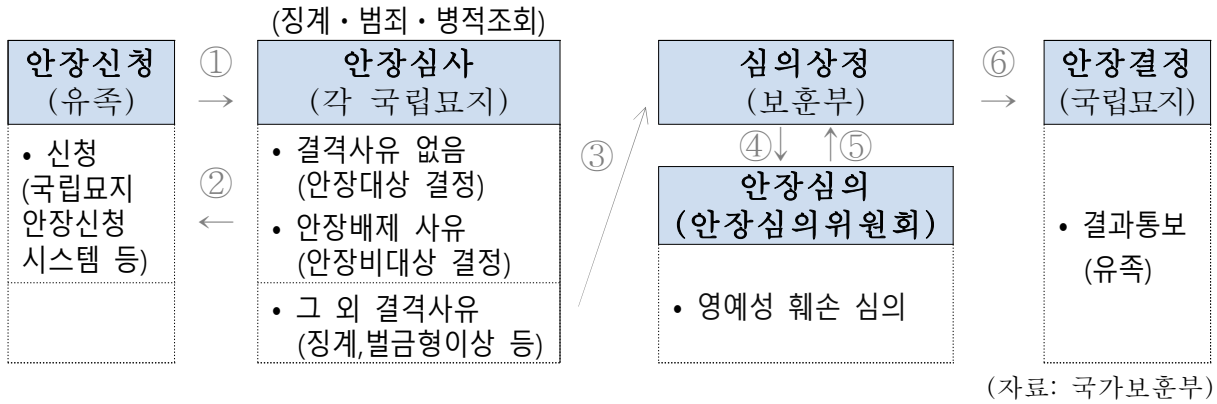
〈 국립이천호국원 안장시설 확충사업 관련 진행 경과 〉

일시	내용
2008. 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2017. 4.	안장시설 50,002기 만장
2018.	봉안당 확충사업(봉안당 50,000기) 추진
2025. 1.	봉안당 확충공사 준공

(자료: 국가보훈부)

- 한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는 안장대상자 또는 유족이 안장자격에
해당하는 국립묘지로 안장을 신청하면 안장심사 등을 거쳐 안장 여부에
대한 승인(대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실제 안·이장이 실시
되는데, 국립묘지가 만장되면 해당 국립묘지의 안·이장은 중단되게 됨.
-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공실(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안장시설)에 안장이 가능함.

〈 국립묘지 안장 절차 〉



○ 국립이천호국원도 2017년 만장됨에 따라 일반적인 안·이장은 중단하였다가 2025년 상반기까지 봉안당 확충공사를 완료하고 재개원할 계획으로 2024년 10월 사전 심사를 위한 안·이장 신청을 재개하였음.

□ 국립이천호국원은 수도권 내 위치한 유일한 호국원으로 만장 이후 오랜 기간 안·이장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안·이장 신청 재개 이후 안·이장 신청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른 안·이장 승인 건수도 폭증하였으나, 실제 안·이장은 승인 건수 대비 상당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이장 대상자 신원조회 시 국가기록원의 자료회신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입장임.

〈 2024년·2025년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현황 〉

(단위: 건)

연도	안·이장 신청	안·이장 승인	실제 안·이장
2024년	4,946	3,952	118
2025년	6,324	7,777	4,688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이천호국원에 이장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일 평균 안·이장 기수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모두 해소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보훈부는 유족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립이천호국원의 이장 대기인원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이천호국원 안·이장 대기인원 등 〉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분	대기인원	일 평균 안·이장 기수	비고 (소요 기간)
국립이천호국원	2,767명	27기	약 102일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이천호국원 외 타 국립묘지 안·이장 대기인원 등 〉

(2025년 12월 말 기준)

구분	대기인원	일 평균 안·이장 기수	비고 (소요 기간)
국립서울현충원	218명	9.5기	약 23일
국립대전현충원	245명	5.4기	약 46일
국립영천호국원	115명	7기	약 17일
국립임실호국원	0명	3기	-
국립산청호국원	85명	4.7기	약 19일
국립괴산호국원	67명	2.3기	약 30일
국립제주호국원	16명	1.6기	약 10일

(자료: 국가보훈부)

17. 국립산청호국원⁷⁵⁾: 부적절한 예산 집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립산청호국원”은 국립산청호국원의 시설 및 묘역을 관리하고 호국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등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7억 5,800만원 중 27억 2,100만원을 집행(집행을 98.6%)하고, 3,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시설공사”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산청호국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2025회계연도 국립산청호국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산청호국원	2,701	2,774	16	△32	2,758	2,721	-	37	2,900
- 시설공사	274	347	-	4	351	351	-	-	274

(자료: 국가보훈부)

75) 세부사업: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2) 검토의견

□ 국립산청호국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간 봉안시설 10,000기를 확충하는 묘역확충 사업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 완료하였음.

○ 2023년에는 묘역확충을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2024년 확충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하였음.

〈 국립산청호국원 묘역확충 사업 개요 〉

○ 총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 (2개년)
○ 확충 기수	:	봉안시설 10,000기(봉안담 9,500기, 자연장 500기)
○ 사업 예산	:	70억 3,500만원 (2023년 3억 3,600만원, 2024년 66억 9,900만원)
○ 추진 현황	:	2023. 3. 30. 제2묘역 확충사업 설계용역 착수 2024. 12. 14. 제2묘역 확충사업 완료 및 준공

〈 국립산청호국원 묘역확충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이·전용 등	집행	다음 연도 이월	불용	예산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집행	다음 연도 이월	불용
묘역확충 사업	336	-	298	1	37	6,699	1	△462	6,028	-	21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109	-	99	-	10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218	-	191	-	27	-	-	-	-	-	-
- 공사비 (420-03)	-	-	-	-	-	6,588	-	△1,036	5,460	-	92
- 감리비 (420-04)	-	-	-	-	-	102	-	574	558	-	118
- 시설부대비 (420-05)	9	-	8	1	-	9	1	-	10	-	-

□ 국가보훈부는 묘역확충 사업이 2024년에 완료됨에 따라, 2025년 예산에는 묘역확충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립산청호국원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노후시설 보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공사”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나,⁷⁶⁾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묘역확충 사업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수수료 990만원)을 공사비(420-03)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시설공사 사업 2025년 예산 편성 내역 〉

■ 시설보수공사 : (2024) 274백만원 → (2025) 347백만원

- 시설개선 보완공사: 161백만원
- 제1주차장 범면 정비공사: 15백만원
- 야외봉안담 전면도어 교체공사 : 98백만원
- 시설물 도장 : 55백만원
- 도로 차선 도색 및 안전시설물 부수 : 18백만원

○ 해당 비용은 ①2024년에 이미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②묘역확충 사업과 무관한 시설공사 사업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를 대행하게 하는 것

⁷⁶⁾ 시설공사 내역사업은 매년 2억 4,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으로,⁷⁷⁾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⁷⁸⁾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2024년 10월 2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평가 업무대행을 의뢰하였고,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11월 25일 해당 의뢰를 접수하면서 “관련 보고서는 2024년 12월 24일까지 제출 하고, 업무대행비용의 납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음.

○ 해당 업무대행 비용은 2024년에 이미 그 지출원인이 발생한 것이고, 납부 시기가 2025년이라면 2024년에 편성된 묘역확충 사업의 예산을 이월하여 2025년에 집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국가보훈부는 2024년 묘역확충 사업의 잔여 예산(2억 1,000만원)은 모두 불용 처리하고, 2025년 예산에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음.

□ 또한, 2025년에는 묘역확충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편성목적이 묘역확충과 무관한 시설공사 사업의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집행하였음.

77)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①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7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 그 밖에, 해당 업무대행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책임감리)에 대한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감리비 비목(420-04)으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공사비 비목(420-03)으로 집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집행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국가보훈부는 국립임실호국원의 묘역 확충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평가 업무대행 비용을 감리비 비목(420-04)에서 집행하였음.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⁷⁹⁾: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7억 9,100만원 중 166억 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내역사업인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제복근무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여 공익광고 집행 및 감사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3억 9,800만원 중 33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사회복지지원	17,310	17,310	88	△607	16,791	16,605	-	186	15,233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3,400	3,400	-	△2	3,398	3,395	-	3	1,700

(자료: 국가보훈부)

79) 세부사업: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4160-390)

2) 검토의견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은 제복근무자를 예우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 및 송출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임.⁸⁰⁾

2025년 동 사업 내에서 추진된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은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존중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 공익광고, 캠페인, 초청행사 및 포상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사업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행사명	집행액
홍보 대행 *한국 언론 진흥 재단	감사 행사	제복근무자 초청 토크콘서트 ‘리스펙트 유’	272
		제대군인 주간 연계 ‘국민한마당 행사’	160
	체육 행사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리스펙트 런’	360
	초청 행사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행사	150
	출판· 콘텐츠	제복근무자 50인을 대상으로 한 ‘마이 히어로북’ 제작·배포	633
		감사캠페인 키비주얼 및 메시지 개발	65
	포상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525
	홍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방송·옥외·온라인 광고	1,090
	성과 분석	국민인식도 조사 등 성과분석	34
소계			3,289
자체 수행	초청 행사	명예로운 보훈 제복근무자(가족) 초청 행사	96
	위문 행사	제복관련 기관 위로·격려	10
소계			106
총계			3,395

80)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복근무자는 제복을 입고 국가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군인·경찰·소방관·해양경찰·교도관을 모두 포괄함.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도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 관련 지출액은 총 33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사업 전체 집행액 166억 500만원의 20% 이상을 차지함.

□ 특히 제복근무자 감사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 대행 용역비가 32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각종 매체 광고료임. 이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부 용역업체에 의한 홍보활동에 총 집행액의 약 20%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함.

○ 구체적으로 온라인 게임인 LCK 결승전 제복근무자 초청 행사는 미래세대의 관심도 제고를 목적으로 홍보영상 제작, 홍보부스 운영 및 제복근무자 초청 등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행사가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또는 취업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명확하지 않음.

□ 국가보훈부가 설정한 사업 성과지표도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도와 신뢰도 증가, 유튜브 조회 수,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수, 광고제 수상 실적 등 홍보 효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성과는 제복근무자 예우 문화 확산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제대군인의 취업을 제고, 전직 성공률 또는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본래 성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제복근무자는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 등 다양한 직군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제대군인전직지원금⁸¹⁾: 지급대상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 도모와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36억 5,700만원 중 128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7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0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7,382	7,382	-	6,275	13,657	12,888	-	769	9,583

(자료: 국가보훈부)

- 동 사업 예산의 편성 근거를 보면, 중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은 1인당 월 지급액이 58만원, 장기복무자 전직지원금의 경우 1인당 월 지급액은 81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⁸²⁾

81) 세부사업: 제대군인전직지원금(4160-391)

8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함.

〈2024~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예산 세부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합 계	70억 500만원	73억 8,200만원
중기복무자	55만원 X 6개월 X 1,705명 X 91.5% = 51억 4,800만원	58만원 X 6개월 X 1,705명 X 91.5% = 54억 2,900만원
장기복무자	77만원 X 6개월 X 454명 X 88.5% = 18억 5,600만원	81만원 X 6개월 X 454명 X 88.5% = 19억 5,300만원

자료: 2024년,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신청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장기복무자	559	712	937	736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414

(자료: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의 연도별 계획인원 및 지급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획인원 (A)	장기복무자	394	376	454	454
	중기복무자	1,802	1,710	1,705	1,705
지급인원 (B)	장기복무자	559	712	937	1,025
	중기복무자	1,916	2,536	2,789	2,649
차이 (=A-B)	장기복무자	△165	△336	△483	△571
	중기복무자	△114	△826	△1,084	△944
	소 계	△279	△1,162	△1,567	△1,515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 2023년 및 2024년에는 ‘보상금’에서 각각 9억 1,500만원, 30억원 및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여 왔음.

2025년에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2024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62억 7,5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2022년~2025년 전직지원금 예산액 및 부족분 발생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부족분(B-A)	이·전용 등
2018	2,407	3,529		1,125
2019	3,314	3,313	-	
2020	3,314	3,314	-	
2021	3,314	3,314	-	-
2022	6,172	7,087	915	915
2023	6,172	9,135	2,963	3,000
2024	7,005	11,923	4,918	4,946
2025	7,382	12,888	5,506	6,275

(자료: 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신청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연도	중기 및 장기 전역자(신청대상)		신청자	신청률	예산액
2019	중기	3,563	1,764	49.5	3,314
	장기	1,039	360	34.6	
2020	중기	3,125	1,631	52.2	3,314
	장기	1,157	403	34.8	
2021	중기	2,821	1,569	55.6	3,314
	장기	834	399	47.8	
2022	중기	2,999	1,916	63.9	6,172
	장기	1,103	559	50.7	
2023	중기	4,061	2,536	62.4	6,172
	장기	1,266	712	56.2	
2024	중기	4,486	2,789	62.2	7,005
	장기	1,700	937	55.1	
2025	중기	4,417	2,649	60.0	7,382
	장기	2,080	1,025	49.3	

(자료: 국가보훈부)

□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2년 신청자 수보다도 적은 숫자로 계상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전용 등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음.

〈 2025회계연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감액 세부사업	이·전용증액 세부사업	금액
이용(8.20.)	고엽제환자검진	제대군인전직지원금	50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200
	독립유공자등발굴포상		100
전용(8.20.)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325
이용(9.17.)	국립묘지조성		5,150
합 계			6,275

(자료: 국가보훈부)

〈 연도별 지원금 소진 시기 및 부족액 현황 등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예산 소진 시기	부족분 충당방식	규모
2021	3,314	3,314	-	-	-
2022	6,172	7,087	12월	이용	915
2023	6,172	9,135	9월	이용	3,000
2024	7,005	11,923	8월	이·전용	4,946
2025	7,382	12,888	8월	이·전용	6,275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하여 “국가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목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198만원)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상응하게 조정(중기복무자 : 6개월 →7개월 / 장기복무자 : 6개월→8개월)하겠다고 밝힘.

또한 2024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바 있음.

- 전직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국가보훈부는 지원액 상향에 앞서 현재 기준으로도 매년 과소계상되어 예산부족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로,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해 타 사업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된 타 사업의 목적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Ⅲ. 보훈기금

1.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⁸³⁾: 보훈원 시설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은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 감면비 지원, 민간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훈원 양로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95억 4,600만원 중 95억 1,700만원 (99.7%)이 집행되고 2,9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	8,372	9,546	-	9,546	9,517	-	29	8,623
- 민간요양시설 이용지원	3,367	4,438	-	4,438	4,414	-	24	3,759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998	1,101	-	1,101	1,096	-	5	1,070
- 보훈원 양로지원	3,543	3,543	-	3,543	3,543	-	-	3,543
- 자원봉사 활동지원	67	67	-	67	67	-	-	-
-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	397	397	-	397	397	-	-	251

(자료: 국가보훈부)

83) 세부사업: 보훈요양 및 양로지원(2161-444)

□ 내역사업인 “보훈원 양로지원”은 보훈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식주 비용 등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5억 4,3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은 11개소 보훈복지시설⁸⁴⁾의 노후화 시설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3억 9,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양로지원을 위해 1997년 6월 보훈기금을 투입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양로시설인 ‘보훈원’을 건립하였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양로지원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의식주, 의료 서비스 및 사후 묘지안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84) 보훈원, 보훈복지타운, 보훈휴양원, 8개 보훈요양원

〈보훈원 현황〉

구분	내용
면적	· 대지 12,530㎡, 건물 10,340㎡(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 시설	· 주거시설(126실): 1인실 62실, 2인실 52실, 3인실 5실, 전문요양 7실 · 편의 및 부대시설 : 목욕탕, 의무실,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장례식장, 강당, 식당, 노래방, 남·여 프로그램실, 탁구장, 이·미용실, 게이트볼장, 산책로 등 · 창훈묘원(공동묘지) 안장 현황: 현재 234기 안장, 잔여기수 86기
건립연도	· 1997. 6월 신축

(자료: 국가보훈부)

□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을 시정요구⁸⁵⁾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조치완료’로 처리 결과를 통보(2025.12.31.)하면서 2026년 개보수 예산 30억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확보한 개보수 예산 30억원은 복권기금 법정배분금⁸⁶⁾으로,

85) [지적사항] 보훈원과 복지타운의 입소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가 무의탁 고령 유공자에게 양질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

8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보훈복지타운의 리모델링⁸⁷⁾에 집행(현재 공사중, 12월 완료) 할 계획이며, 동 세부사업 환경개선 예산의 집행계획에는 보훈요양원과 휴양원에 대한 시설개보수 계획만 있을 뿐, 보훈원 시설 개선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6년 보훈복지시설 환경개선 계획〉

시설명	개선 계획	집행액(원)
수원보훈요양원	요양원 출입구 바닥 보수 공사	15,000,000
	수원보훈요양원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20,000,000
광주보훈요양원	강당 및 물리치료실 등 바닥 교체 공사	74,000,000
김해보훈요양원	무정전 UPS 설치 공사	18,000,000
대구보훈요양원	세탁실 집진설비 설치 공사	14,000,000
대전보훈요양원	R형 수신기 교체 공사	34,000,000
	휠체어 구매	20,000,000
충주휴양원	냉난방기 등 노후 비품 교체	27,000,000
	객실용 TV 교체	11,000,000
합 계		251,000,00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원은 1997년 건립 이후 리모델링이 실시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 현황을 살펴봐도 안전 및 생활에 필수적인 공사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임.

87) 보훈복지타운(1996년 준공) 리모델링: 120세대(싱크대·개수대·샷시 교체 예정)

〈최근 5년간 보훈원 시설 개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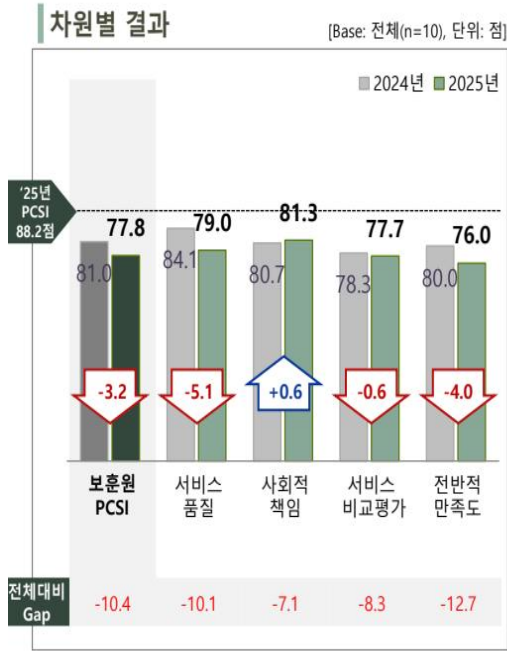
구분	집행내역	집행액 (백만원)
2021년	-	-
2022년	· 보훈원 방화셔터 및 피난안내유도선 설치 등 3건	30
2023년	· 보훈원 옥상 방수공사 등 18건	128
2024년	-	-
2025년	-	-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에서도 보훈원의 만족도는 다른 복지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VOC 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 의료장비 최신화 필요, 해충 방역 강화 등으로 시설 및 환경 개선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보훈원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항목별 결과

[Base: 전체(n=10), 단위: 점]

구분	보훈원	전체 대비	전년 대비	
사례수	(10)	-	-	
서비스 내용 및 품질 76.3점	본원적 욕구충족	76.0	-12.2	-9.0
	서비스 효익성	75.0	-14.7	-8.0
	서비스 완결성	78.0	-10.8	-5.0
서비스 제공과정 82.0점	상호작용	85.0	-6.5	0.0
	커뮤니케이션	77.0	-12.8	-1.0
	고객케어	84.0	-5.9	-1.0
서비스 제공 환경 78.7점	이용자 환경 편리성	75.0	-9.2	-11.0
	제도/절차/시스템 환경	80.0	-9.6	-6.0
	인적자원 역량환경	81.0	-9.4	-5.0
사회적 책임 81.3점	정책 타당성	80.0	-7.1	-2.0
	지속 가능성	83.0	-5.6	+4.0
	윤리성	81.0	-8.6	0.0
서비스 비교평가 77.7점	기대 대비	72.0	-14.5	-6.0
	이상점 대비	80.0	-5.8	+5.0
	타 기관 대비	81.0	-4.6	-1.0
전반적 만족도 76.0점	인지만족	77.0	-11.6	-5.0
	감정만족	75.0	-13.7	-3.0

(자료: 2025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p.126)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보훈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 등 양질의 양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⁸⁸⁾: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는 대부사업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위탁은행 계약금리와 보훈대부 이율의 차이를 보전하고 채납채권 회수업무 외부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174억 1,000만원 중 173억 7,200만원(99.8%)이 집행되고 3,8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 획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계 획 현 액	집 행 액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불 용 액	
	당 초	수 정						
국 가 유 공 자 등 대 부 관 리	10,657	17,410	-	17,410	17,372	-	38	11,100
- 이 차 보 전 금	10,547	17,300	-	17,300	17,300	-	-	10,893
- 채 권 회 수 업 무 위 탁 수 수 료	110	110	-	110	72	-	38	110
- 주 택 지 원 시 스템 운 영	-	-	-	-	-	-	-	97

(자료: 국가보훈부)

88) 세부사업: 국가유공자등 대부관리(2259-390~392)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 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간은행 전용 상품(“나라사랑대출”)을 통한 위탁대부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하여 보훈관서에서 직접대부를 지원하고 있음.

○ 위탁대부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개 은행과 대부업무 위탁협약⁸⁹⁾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되, 은행금리와 보훈금리의 차이만큼을 보훈기금으로 매월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보훈대상자 대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목적	·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또는 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중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배우자
종류	· 농토구입대부 ·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 대부) · 사업대부 · 생활안정대부
방식	· 위탁대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은행 재원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이차보전 · 직접대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대해 보훈관서에서 대부 실시

(자료: 국가보훈부)

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위임 및 위탁)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부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대부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나,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증가('22년 77억 7,900만원 → '23년 108억 3,500만원 → '24년 172억 8,000만원 → '25년 173억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대출잔액이 누적되고 있고, 시중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최근 위탁대부 규모 및 사업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 원	22,742	25,145	23,907	21,117
대부액	184,806	206,779	171,712	129,897
이차보전금	7,779	10,835	17,280	17,300

(자료: 국가보훈부)

〈연도별 대출평균잔액 및 이차보전을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출채권 평균잔액	590,356	642,053	683,034	667,228
보훈금리	1.4~2.4	2.4~3.4	3.0~4.0	3.0~4.0
시중금리	(부동산) 2.55~5.21 (신용) 3.30~6.18	(부동산) 4.70~5.04 (신용) 5.19~5.75	(부동산) 4.53~4.94 (신용) 4.99~5.39	(부동산) 3.69~4.32 (신용) 4.19~4.82
평균 이차보전율*	1.34	1.69	2.53	2.59

*이차보전율은 위탁은행에 지급한 이차보전금을 평균잔액으로 나눠 역산하여 산출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이러한 대출채권 잔액 증가와 고금리 지속 추세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⁹⁰⁾, 매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22년 47억 4,800만원 → '23년 61억 800만원 → '24년 및 '25년 67억 5,300만원).

〈2022년~2025년 이차보전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변경액	계획현액	집행액
2022년	3,031	4,748	7,779	7,779
2023년	4,727	6,108	10,835	10,835
2024년	10,527	6,753	17,280	17,280
2025년	10,547	6,753	17,300	17,300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재정법」 제70조⁹¹⁾에 따르면, 금융성 기금이 아닌 경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자체 변경할 수 있고, 20%를 초과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90) 2025년 계획액 편성시 대출평균잔액은 604,495백만원, 이차보전율을 1.745%로 이차보전금을 산출하였으나, 이는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지 못한 추계로 보임.

9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자체 변경 허용 한도 충족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변경하여 이차보전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매년 기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도 이차보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지급금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9억 6,9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5년 당해연도 발생 지급 의무액이 감소하면서 연말 기준 75억 1,8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미지급액	당해연도 발생 지급 의무	당해연도 집행액	미지급액
2021년	-	1,561	1,487	74
2022년	74	7,831	7,779	126
2023년	126	20,389	10,835	9,680
2024년	9,680	19,569	17,280	11,969
2025년	11,969	12,849	17,300	7,51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 및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이차보전금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위탁은행에 미지급한 이차보전금의 차년도 이월을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함.

□ 매년 미지급 발생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 대부사업에 대한 민간은행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자 청구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부지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이차보전금 미지급 문제 대책으로 2024년 7월부터 위탁대부 한도액을 축소할 바 있는데,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면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위탁대부 한도액 축소 내역〉

자금 종류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신축, 주택구입, 아파트분양	대도시 80백만원 중소도시 55백만원 농어촌 40백만원	대도시 60백만원 중소도시 40백만원 농어촌 3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금리 변동 추이와 대출잔액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금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차보전금 미지급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골프장 위탁운영⁹²⁾: 88관광 위탁 근거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골프장 위탁운영”은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88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88관광개발(주)에 골프장 운영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02억 3,300만원이 전액(100%)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골프장 위탁운영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골프장 위탁운영	17,643	20,233	-	20,233	20,233	-	-	18,358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의 관리 주체로,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88골프장”을 건설·개장하였고, 같은 법 제7조제6항⁹³⁾에 따라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88관광개발주식회사”(이하 “88관광”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88관광과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를 체결하여 골프장 관리를 위탁·운영해 오고 있음.

92) 세부사업: 골프장 위탁운영(2362-434)

93) 「보훈기금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88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현황〉

구 분	내 용
소유자	국가보훈부
수탁자	88관광개발(주)
위탁 근거	「보훈기금법」 제7조제6항
계약 일자	'88.7.1.('26.3.31. 등 5회 약정 변경)
위탁 업무	1. 88골프장 및 관련시설내의 토지·건물(장착물 포함), 수목, 잔디 및 기타시설물 등 보훈기금소유재산 일체에 대한 관리 2. 골프장(36홀), 식당, 티하우스 및 용품매점, 연습장, 실외연습장 및 PAR3홀 운영과 회원등록 3. 회원관리 및 기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운영 인력	총 149명(임원 3명, 행정직 38명, 현장직 108명)
위탁수수료	43억원('25년, 부가가치세 포함) * 근거: 골프장 관리운영 위탁약정서 제5조(수탁회계 총수익의 1/3 범위 내)

(자료: 국가보훈부)

2) 검토의견

□ 국가보훈부는 88관광으로 하여금 88골프장을 관리·운영하게 하면서 매년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88골프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매년 보훈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보훈대상자 복지 및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동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임.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⁹⁴⁾,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위탁의 근거를 두어야 하고, 모법에 위탁 근거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모법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어야 함⁹⁵⁾.

□ 한편,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⁹⁶⁾에 따르면 국가

94)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95)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년판, p.488

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계약은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⁹⁷⁾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수의계약 사유 가운데 하나(제1항제5호마목)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근거 법령에 국가사업을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⁹⁸⁾.

□ 그런데, 현행 「보훈기금법」은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보훈부가 직접 조성한 사업장(88골프장)을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88관광)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또한, 하위 법령에 위탁 업무의 내용과 범위,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9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라. (생략)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 자. (생략)

② ~ ⑥ (생략)

98) 법제처 07-0044(2007. 3. 23.), 법제처 21-0153(2021. 5. 8.) 등

88관광을 수탁자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88관광과 수의계약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⁹⁹⁾.

〈「보훈기금법」 기금의 운용·관리 규정〉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 ④ (생략)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 ⑨ (생략)

□ 최근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마목의 적용 기준을 통보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면 개별 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탁자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법령 등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99) 관련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026.4.1.)이 발의되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 적용 기준〉

기준	내 용
1	- 개별 <u>법률</u> 에서 특정 국가사업 관련 위탁 업무의 내용과 범위, 해당 업무를 <u>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u>
2	- <u>법률 또는 법규명령</u> 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u>수탁자 지정 권한</u>) 명시 필요 - 법률·법규명령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 행위를 행정규칙으로 위임 필요 * 법률·법규명령에 수탁자 지정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정 및 수의계약 불가
3	- 수의계약 상대방은 1, 2에 따라 <u>법률·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u> 수탁자로서 지정된 자(<u>명칭이 기재된 자</u>)이어야 함

(자료: 재정경제부,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업무 철저」, 계약정책과-234(2026.2.24.))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88골프장 위탁 및 88관광과의 수의계약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V.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 토지매각대¹⁰⁰⁾: 매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토지매각대” 사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수입으로, 2025년 계획현액 30억 7,200만원 중 12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2억 3,600만원을 수납하고 1,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년도 토지매각대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2026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징수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현액(B)	결정액(C)	(D)			
토지매각대	3,072	3,072	-	3,072	1,255	1,236	19	-	3,379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에 따라 환수된 친일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매각하고 있음.

100) 세부사업: 토지매각대(72-721)

□ 친일 국가귀속재산 토지 매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153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매각대금이 20억원을 하회하고 있음.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각액이 100억원을 하회하자, 국가보훈부는 2022년 3월 당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토지 140필지를 뽑아 목록을 공개하고 매수를 독려하는 등 현재까지 매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 150억원 매각을 정점으로 2023년부터는 실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2023년 8억원, 2024년 23억원, 2025년 11억원 등 매각실적이 매우 부진함.

- 매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활용도가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토지는 일찍 매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캠프측은 ‘(최저입찰가를 결정하는) 감정가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 이득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⁰¹⁾

<매각 실적>

(단위: 억원)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필지	31	78	118	62	174	52	30	77	31	20	12	20	4	2	11	21	36	779
매각	26	80	67	55	142	18	91	56	86	12	4	61	7	150	8	22	11	897
수납	26	57	78	46	145	38	31	91	88	24	17	15	57	153	9	18	12	905

101) 시사저널, ‘파묘’ 안 하고 몰수한 친일파 땅 600억…정작 유공자에겐 ‘그림의 떡’, 2024.3.15

□ 총 1,600필지의 친일 귀속 재산 중 779필지가 이미 매각되고 잔여 재산은 821필지임.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도로, 하천, 군부대 등 법령상 매각 제한 사유가 있는 매각제한 재산을 제외한 매각 가능 재산은 255필지로, 공시가는 84억원에 불과함.

2025년 토지 공시지가율(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 평균치인 65.5%를 적용하면, 매각 가능 재산의 시세는 대략 128 억원으로 추정됨.

〈국가보훈부 소관 잔여 친일 귀속 재산 현황〉

구분		계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합계	필지	822	367	107	286	61
	면적(천㎡)	6,362	407	30	5,852	71
	공시가(억원, %)	404(100)	61(15.1)	33(8.2)	299(74.0)	11(2.7)
매각 가능 재산	필지	255	136	15	86	18
	면적(천㎡)	1,022	203	2	762	55
	공시가(억원, %)	84(21.0)	22(28.2)	1(1.2)	57(65.9)	4(4.7)
매각 제한 재산*	필지	566	231	92	200	43
	면적(천㎡)	5,338	204	28	5,090	16
	공시가(억원, %)	320(79.0)	39(11.6)	32(10.0)	242(76.2)	7(2.2)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현재 매각 가능 귀속재산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기적으로 공매에 붙이고 있고, 매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등 재산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국가보훈부는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지자체, 군부대 등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매각 제한 재산의 매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¹⁰²⁾: 대상인원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 등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1,043억 7,800만원 중 1,037억 9,482만원을 집행하고 5억 8,317만원을 불용하였음.

○ 내역사업인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 계획현액 992억 2,800만원 중 988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사업 결산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6,997	104,378	-	-	104,378	103,795	-	583	98,097
(손)자녀 생활지원금	91,878	99,228	-	-	99,228	98,810	-	418	92,981

(자료: 국가보훈부)

102) 세부사업: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3141-401)

2) 검토의견

(1) 대상인원 추계정확성 확보 필요

□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¹⁰³⁾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보훈부는 2021년부터 매년 계획액이 부족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매년 실집행액이 계획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대상인원에 대한 추계의 낮은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계획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실제 지원인원이 계획인원을 상회함.

○ 2021년부터 매년 계획인원이 지원인원보다 과소 계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16억원~84억원을 계획변경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5년에도 국가보훈부는 73억 5,000만원을 계획변경을 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1	‘22	‘23	‘24	‘25
단 가	100~478천 원				
계 획 액	79,534	87,849	91,878	91,878	91,878
(계 획 인 원)	(18,766)	(20,535)	(21,186)	(21,186)	(21,186)
집 행 액	87,764	90,504	93,378	94,865	98,810
(집 행 인 원)	(20,498)	(20,905)	(21,479)	(21,734)	(22,556)
집 행 률	110.3	103.0	101.6	103.3	107.5

(자료: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신규 포상 등으로 유족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2026년도 계획안 편성 시 지원대상인원을 ‘2022~2024년 3년 평균 지원자 수(21,373명) 또는 2025년초 지원자 수(22,260명)’가 아닌 ‘2025년 계획안 편성계획인원(21,186명) 대비 1.1% 증가한 21,402명’를 적용하는 등 과소계상하였는바, 2026년 집행 시에도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부족액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향후 계획액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인상 및 일반회계 전입 검토 필요

□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업무계획」에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7년동안 고작 ‘1만원’만이 인상되었음.

○ 생활지원금은 2019년 최대 46.8만원에서 2025년 최대 47.8만원으로 1만원(2%) 인상에 그쳤으며, 2026년에도 2025년과 같은 금액 지급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됨.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은 12.2% 상승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19년 최대 51.2만원에서 2025년 최대 76.5만 원으로 약 24.3만원 인상되었음.

□ 2018년부터 국가보훈부가 독립유공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매년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 지급 소요가 9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자체수입 확보 여력이 부족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특성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내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에는 937억 5,400만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고, 이 중 929억 8,100만원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생활지원금에 쓰

인다고 볼 수 있음. 2026년 계획액도 과소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집행예상액은 1,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규모*				손자녀 생활지원금 집행액**(B)	
	합계	자체수입	일반회계 전입금(A)	여유자금 회수		A/B
2017년	51,874	35,710	-	16,164	-	-
2018년	143,021	5,282	54,686	83,053	72,522	0.75
2019년	197,635	4,589	76,203	116,843	77,344	0.99
2020년	161,893	7,712	76,689	77,492	81,920	0.94
2021년	167,035	11,239	80,826	74,970	87,764	0.92
2022년	253,010	20,192	88,848	143,970	90,504	0.98
2023년	335,655	8,895	92,651	234,109	93,378	0.99
2024년	200,682	7,428	92,651	100,603	94,865	0.98
2025년	149,093	8,751	92,583	47,759	90,627	1.02
2026년	151,369	9,507	93,754	48,108	92,958	1.01

* 수입 규모: 2017~2024년 결산 기준, 2025~2026년 계획 기준

** 손자녀 생활지원금 계획액: 당초 계획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소요 재원 전액이 사실상 일반회계 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수입-지출을 거쳐 집행되고 있는바, 국가보훈부는 동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손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이관할 경우 다른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요구 등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동 사업이 현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 인상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금의 자체 수입 비중(최근 5년간 9.3%)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매년 사업의 계획액 또한 과소 편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과태료는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데, 2021~2024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수납률이 20% 미만이며 수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존재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전년 수준 금액을 관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세입에 계상할 것	○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관행적인 편성이 아닌 최근 3년 실제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을 고려하여 '26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 예산액: ('24) 88백만원('25) 88백만원('26) 11백만원 장수결정액: ('22) 14백만원('23) 18백만원('24) 0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 보훈특 별고용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채용환경 악화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체 등과 사전 채용 협의를 충분히 거쳐 보훈특별고용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부터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미 종식되었고, 취업지원 대상 중 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보훈대상자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과 협조는 줄어들고 있으며, 채용시험 가점으로 취업한 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특별고용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의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법령의 규범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3) 수납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수납률이 23.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0억 900만 원에 달하며, 수납률이 두 번째로 저조한 광복회관 임차보증금의 경우 수납률 38.0%, 미수납액은 3억 3,6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임 - 2025년은 8월 기준 13.5%에 불과	○ (세입예산 편성)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관행적인 편성이 아닌 최근 3년 실제 수납액 및 징수결정액 등 규모를 고려하여 '26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예산액: ('24) 87억원('25) 87억원('26) 87억원 장수결정액: ('22) 111억원('23) 71억원('24) 82억원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연도별 실제 수납액 규모나 수납률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임의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	○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보훈급여 과오금금 징수방안 실시 - 생계곤란자 분할납부(최대 5년, 연 31%) 허용 - 체납자에 대한 연체금(연 5%) 부과 - 집중 회수기간 연 1회 운영 - 소득·재산조사 수시 실시 및 강제징수(압류 등) 이행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4) 생계지 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 적과 대상자 특성 반영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생계지원금’은 과거 집행실적 및 대상자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인원을 추계함으로써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119억 5,800만원)의 약 31%(36억 9,800만원)가 불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나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아닌 부주의한 인원 추계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생계지원금 추계방식 변경 - '25년 3,535명('22 ~ '23년 증감율 적용) - '26년 24,792명('25년 집행인원 + 신규 참전배우자인원)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 신규승 계자녀 에 대한 단가 현실화 노력	○ [지적사항] 6·25자녀수당 대상 유형은 ‘제적자녀’,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로 구분되는데, 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와 신규승계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단가 간 큰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 (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6·25 자녀수당 단가	○ 6.25전몰군경 유자녀 간 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승계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하고 있음 - '23년 기본55%~~추가15%~~ '24년 기본55%~~추가12.5%~~ '25년 기본55%~~추가8.3%~~ '26년 기본55%~~추가7.3%~~ * '23년 제적자녀 수당의 286%→'26년 369%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table><tr><th>대상</th><th>2023년도</th><th>2024년도</th></tr><tr><td>제적 자녀</td><td>월 1,536천원</td><td>월 1,613천원</td></tr><tr><td>승계 자녀</td><td>월 1,307천원</td><td>월 1,372천원</td></tr><tr><td>신규 승계 자녀</td><td>월 439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td><td>월 516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신규승계자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 반영, 계획 수립 및 보고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대상	2023년도	2024년도	제적 자녀	월 1,536천원	월 1,613천원	승계 자녀	월 1,307천원	월 1,372천원	신규 승계 자녀	월 439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	월 516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			
대상	2023년도	2024년도														
제적 자녀	월 1,536천원	월 1,613천원														
승계 자녀	월 1,307천원	월 1,372천원														
신규 승계 자녀	월 439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	월 516천원 (생계곤란자 추가지 원) 114천원														
(6) 예산편 성 목적에 부합하 는 워크숍 프로그 램 편성	○ [지적사항]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비상 상황에 따른 워크숍 미개최로 해당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산으로 심사 기준 정립과 무관한 전쟁기념관 방문 및 무기체계 관람 등을 실시하는데 약 1,300만원을 사용함 - 이는 보훈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활동으로, 심사 전문성 제고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심사와 무관한 외부 관람 활동에 예산을 집행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이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편성을 할 것	○ 워크숍 계획 수립 전, 담당자에게 '24 결산 관련 내용 등을 교육하여 내실있는 워크숍 준비 ○ '25년 워크숍(11.13.) 시 직원들의 보훈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 - (주요 프로그램) 심사사례 공유, 현장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지방관서 협조 및 당부사항 안내 등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3일														
(7) 재정 소요 관리 개선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신체검사 우편요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신체검사 수검 대상이 되는 인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예상인원(47,189명)이 과다 추계(실제 발송인원 10,527명)되어 집행이 저조(집행률 22%)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상인원을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포함된 추가 재정 소요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향후, 고엽제 질병 전환(후유의증→후유증)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단계 또는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편성 시 사전에 신체검사 수검예상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8) 국가보 훈등록 증 발급률 제고 방안 마련 등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IC국가보훈등록증 교체발급'은 2024년 36만매 교체 발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 34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계획매수 대비 42% 수준인 15만 1,747매를 발급하는데 그쳐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이 저조하였음 ※ 교체사업 전체 기간(2023년 6월~ 2024년 12월)의 계획 대비 발급률: 33.1% ○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홍보 강화, 대상자 안내 등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IC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단계에서 계획된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보훈관서별 미발급자 대상 개별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의원실(김용만) 보고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9월 16일
(9) 인력 부족에 따른 검진 지연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 안 마련	○ [지적사항]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및 부담 가중으로 고엽제환자 검진의 주요 검사항목의 시행건수는 5,322건으로 전년 대비 4,108건 감소(43.6%)하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48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고엽제환자 검진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외부병원 정밀검사 인정 범위 확대 및 고엽제검진 전담 인력 추가 확보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근전도 검사의 외부병원 인정범위 확대 실시 조치 완료('25.10.20. 문서시행 / '26.1.1.부터 확대실시) ○ 향후, 전공의 파업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도 고엽제 검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 외부병원 검사결과 인정 및 비용 지원 추가확대, 검진 전담의사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0) 국고보 조사업 연장평 가 결과 실효성 확보 필요	○ [지적사항]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2024년 내역사업의 예산을 일정수준 감축할 것” 판정을 받은 ‘공법단체 주관 참전 기념사업’(세부사업 ‘참전유공자지원’의 내역사업)의 보조사업인 6·25참전유공자회의 ‘참전용사 위로 및 격려’ 보조금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감액하여 편성하고, 예산 확정 이후 동 세부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였음	○ 향후 예산 편성 취지 및 사업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편성한 보조사업을 예산 확정 이후 보조사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증액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1) 무인발매 기 등 전산개발 사업의 사전절차 신속 이행	○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무인발매기 등 전산개발’은 운송업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현액의 88.8%가 이월되어 개발 및 시스템 적용이 지연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일정 수립 시 주요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관련 기관 및 부처와의 협의 등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2) 소송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지적사항] 서울교통공사가 운송기관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소송에 대한 체계적 법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	○ 소장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13)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용 문제 개선	○ [지적사항]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보상금 또는 수당에서 이용하였으므로 보상금의 추계 또한 잘못된 것임 -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553억 1,200만원 이용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참전명예수당’ 등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368억 1,900만원 이용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25년에는 연례적 이용 개선을 위해 보상금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은 ‘25년도 2차 추경시 844억원 증액 편성함 - ‘26년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예산(7,147억원)은 ‘25년 본예산 대비 11.8%(+754억원) 증액하였고, 적정 진료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4) 보철용 차량개 조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사업은 2023년 집행률 24.8%, 2024년 집행률 38.9%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바, 이는 예산 편성 시 1인당 단가를 1,500만원으로 과다 계상하였기 때문임 - 2023년 및 2024년 모두 평균 지원금액은 300만원을 하회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철용 차량 개조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편성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단가 조정) ’23~24년 지원 인원 및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단가 재조정 - (산출근거) 65명 × 2.7백만원(’26년) ○ (홍보 강화) 보철용 차량 개조비용 지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 적극 시행 - 보훈제도 안내 책자 수록(’25.1월) - 보훈단체(상이군경회, 5.18 등) 대상 지원사업 안내 공문 발송(’25.8월) - 국가보훈부 블로그 게시(’25.9월) - 상이군경회 홈페이지 게시(’25.9월) - 나라사랑 신문 안내(’25.10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5) 연례적 예산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회계연 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매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부족분을 이·전용으로 충당해 왔으나 2024년은 이·전용 충당 없이 예산액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국가보훈부가 별도 예산 조치 없이 예산액만큼만 집행하였기 때문임 - 국가보훈부는 2024년 실제 진료비 발생액 51억 5,200만원 중 23억 6,500만원(45.9%)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지급하였고, 미지급액은 2026년 예산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 연내 발생한 집행 수요를 다음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	○ 예산 전용을 통해서 제대군인의료지원 ‘24년도 진료비 미지급액(2,787백만원) 및 ’25년도 부족액(1,403백만원) 집행 완료(’25.12월말) ○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증가 추세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26-’30년 중기사업계획 제출하였으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정 진료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6) 보조금 관리지 침에 부합하 지 않는 국비 우선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국비와 자기부담금 비율은 70:30인데, 2024년 설계비 집행 과정에서 국비는 모두 집행된 반면, 자기부담금은 11.9%만 집행되고 대부분이 이월됨. ○ 이는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 방식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보다 국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예산 집행시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문으로 주의 조치 하였음. - 또한, 매주 공사 진행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
(17) 연례적 이월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 리 철저 및 성과지 표 추가·변 경 필요	○ [지적사항] 전시교체사업은 사업이 진행된 2016년부터 2024년까지(2020년 제외) 8년 중 7개 연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함 - 2024년 : 예산현액 32억 3,800만원 중 9억 300만원만을 집행(집행률 27.9%)하고 나머지 2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 성과지표는 2022년부터 ‘독립기념관 콘텐츠 수혜인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정량적 사항인 관람인원만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성과의 질적 평가가 누락되어 온전한 평가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전시교체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위상에 맞는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 전시교체사업 예산집행현황 철저 점검을 통해 금년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였으며, 향후 진행되는 전시교체사업에 있어서도 공정상황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보조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7관 전시교체 공정 변경일정에 따라 '25년 연내 계약체결 및 선금지급 추진으로 최소 이월액(791백만원)만 발생시켰으며, '26.8. 완공 목표 예정임 ○ 독립기념관 사업성과 제고 노력도 반영을 위해 '26년도 성과계획서 상 보조 성과지표로 '자체수입 실적'을 추가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8) 독립기 기념관 전시 편성 상황 점검 필요	○ [지적사항] 2025년, 광복 80주년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현 관장의 발언이 사회적·국민적 논란이 된 사례가 발생함 - 제7관의 전시물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의 독립운동의 의의가 축소되고, 연합국 원조 활동의 측면 위주로 지나치게 부각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됨. - 「연합국과 함께 한 독립운동」이 현 관장 취임 후인 2024년도에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달라짐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 내 제7관 건립에 있어 대한민국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독립운동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편성 상황을 점검할 것	○ 제7관 전시교체 시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전시내용이 되도록 내·외부 모니터링 등 전시 편성 상황 점검 조치 - 전시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및 국민 위원단 구성, 간담회 개최(2회, ‘25.7.26./’25.7.29.)를 통해 전시방향 대 국민 공개 및 의견 수렴·반영 완료 - 완공(‘26.8.)시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당초 조성 취지에 맞게 제국주의에 맞서 세계와의 연대 속에 독립을 쟁취한 한국 독립운동의 의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19) 국고보 조금 교부 및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이미 집행된 이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2024회계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가 25년 2월 6일 내지는 7일로 되어 있으나, 결정서 내 교부 현황에 따르면 교부는 2024년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 등 사업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존재함 - 강원동부지청 등 4곳에서는 2024년에 정상적으로 교부를 결정한 반면, 이외 나머지 지방청에서는 모두 절차를 위반함 ○ (보조율 위반 문제) 일부 사업(100곳 중 9곳)이 100% 국비 지원으로 집행됨 - 100%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재난 등 특수한 국가책무 사업 등이어야 하나, 이 사업은 일반 청소년 문화활동 성격으로, 원칙에 어긋남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 100% 국비 지원을 받은 곳들 중 보고사업 실적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곳(국제조리고등학교, 통진고등학교, 마리아회고등학교)들도 확인됨	○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의 내용과 실제 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상 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치하고, 27개 지방 보훈관서 직원 대상 공문 발송(9.2.)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금액 입력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등 정산 철저 조치 * 온라인 교육(9.18.), 집합교육(12.18.) ○ 외부 전문업체 용역계약을 통한 체험활동 평가 위탁을 통해 전반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후 모니터링 평가로 사업 적정성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감액, 미지원 등 조치 예정 ○ 향후,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의 절차뿐만 아니라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입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예산 급증) 동 내역사업 예산은 2020년 6억 6,000만원에서 2024년 18억 7,800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함. 급격한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과 평가와 집행 관리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교부결정 절차 위반, 국고보조 시 자부담 원칙 위반,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회계질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 및 해당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율 적용 및 교부결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0) 보훈교육연구원과 국가보훈부의 유사사업 재검토	○ [지적사항] 보훈교육연구원은 청소년대상 발간물 제작, 보훈학습 콘텐츠 제작, 교육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훈부 자체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국가보훈부 자체 사업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검토할 것 - 국가보훈부는 보훈교육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 업무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연구원의 임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직무를 체계적으로 분배함으로써 보훈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사업 중 일부 유사한 사업명을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보훈부 자체사업과의 유사성을 해소하였음 ○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교육계획 공유, 교육자료 및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보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3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1) 교육 콘텐츠 사전· 사후 관리 강화	○ [지적사항] ‘라이브 온 보훈’ 강의 교안에서 ‘3대 독립운동가’를 설명하면서, 김구·안창호와 함께 이승만을 포함함.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독단적 활동 및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탄핵된 인물로, 자주독립 노선과 배치되는 행적을 보인 이승만을 ‘3대 독립운동가’로 교육하는 것은 역사적 균형성 결여 -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보훈부 교육 예산이 역사적으로 논란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규정·교육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역사에 대한 경험 없는 미래세대에게 보훈에 대한 이해, 공감 증대로 쓰고 있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존재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라이브 인 보훈’ 콘텐츠에서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는 인물을 ‘대표 독립운동가’로 제시한 부분을 즉각 수정·삭제하고, 이미 교육을 받은 수강생에게는 정정 안내를 하며, 향후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학계검증 및 자문 철차를 강화할 것	○ ‘라이브 온 보훈’ 콘텐츠 중 독립 관련 내용에 대해 자문 등 재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역사적 논란이 있는 강의는 삭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음 ○ 향후, ‘라이브 온 보훈’ 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증을 철저히 거쳐 제작·운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2) 보훈문 화관 건립 지원사 업 관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2024년엔 창원시, 포항시, 평택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문화관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창원시 포항시 경우 예산액 전액이 이월, 평택시의 경우 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훈문화관 건립 지연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 사업 재검토를 고려할 것	○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보훈문화관 건립 지원 사업의 202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는 보조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연내 소요에 맞는 예산을 교부하였음 ○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이후 이월·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3) 독립기 념관 전시 기획 방향 재검토 필요	○ [지적사항] (중복성)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중복된 전시임 ○ (정체성 혼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념해야 할 공간이 산업화, 민주화, 문화강국 서사까지 다 담으면 독립운동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음 - 독립운동사라는 본래의 주제가 현대 국가 발전 서사에 덮여, 관람객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희석된 채 받아들일 위험이 있음 ○ 독립운동 기념이라는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상관 없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발전사를 다루는 전시관 연구용역은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판단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독립운동사와 그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기획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	○ 독립기념관 설립목적 상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체성 혼란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국가발전사’가 아닌 ‘국난극복사/독립운동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독립기념관 2026년도 사업계획서 상 「본질^{독립정신}에 집중하는 기념관」을 핵심가치로 하여 독립운동사 위주로 전시·교육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완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4) 사업관 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2024회계연도 몽골이태준열사 기념관은 전체 금액의 97%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부는 이 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실적 보고서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있는지도 확인 못한 상황임 - 보훈부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정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 세부적인 결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기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현충시설관리지침」상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수령의무를 해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 정산 보고서 및 실적 보고서 검토 후 국고보조금 정산 및 교부 금액 확정(현충시설관리과-3851, '25.12.31.) * 보조사업자의 이자 반납 지연으로, 이자 잔액 확인(원화) 지연 - 관련 책임자 교육 철저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5) 사업관 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전국의 현충시설 1,001곳 중 436곳이 사유지인데, 정부가 현충시설로 지정하면 관리는 소유자가 맡음. 그러나, 젊은 후손은 도시로 떠나고 남아 있는 후손은 고령이거나 형편이 어려워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신경쓰지 못하는 실정임 - 독립운동 유적의 발굴과 관리를 후손들에만 맡겨둬서는 안됨.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발굴해 독립투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관리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의 전수 점검을 통해 노후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보존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 선제적 실태점검 및 개보수 · 국민 참여 등을 통한 안전시스템 구축 · 외부자원 연계 현충시설 활성화 추진 · 법률적 토대 마련(「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조치완료일 : 2025년 10월 14일
(26) 사업관 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AI기반 디지털 휴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구축 및 활용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배포·활용 채널 부재로 실사용이 저조하고 집행 부진 및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현충시설 AI 디지털 휴먼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AI 디지털 휴먼 활용 시나리오·상시 서비스모델·교육 커리큘럼·저작권/2차 활용 방안을 문서로 확정·제출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문체부·교육부·지자체 유사 콘텐츠와 기능 매핑표를 제출할 것	○ 「보훈인물 AI 디지털 휴먼 향후 추진 계획」 수립 ('25. 12. 30) - 기 구축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서비스 내실을 다지는 한편, 교육현장 및 보훈행사 등에 연계·활용하는 등 콘텐츠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음. ○ 보훈인물 AI디지털휴먼은 독립유공자에 특화된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기념관 현장에서 관람객과 소통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체험적으로 전달하는 상시 보훈교육 콘텐츠로, 관광자원 등으로 소비되는 타 콘텐츠와 대상·목적·기능 모두에서 차별화됨 <역사인물 AI디지털휴먼 콘텐츠 비교 >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table border="1"> <tr> <td>국가보훈부</td><td>문체부 (한국문화재단)</td><td>지방자치단체 (연천군, 경주시, 인제군 등)</td></tr> <tr> <td>독립운동가 3인 대상 (김구·안중근·윤봉길)</td><td>고종 황제</td><td>선사시대 인물(ICEMAN), 해초, 한용운 등</td></tr> <tr> <td>보훈에 대한 흥미 유발 목적 및 보훈정신 함양 역사교육</td><td>문화유산 홍보 및 역사 관광자원화</td><td>지역 관람객 유치 및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경험 제공</td></tr> <tr> <td>독립운동 역사 및 유공자 개인 철학 기반 인터렉션, 기능 역사퀴즈 등 교육 콘텐츠</td><td>박물관/궁궐 등 전시 유물 및 시대상 해설, 특정 문화·역사적 테마 중심의 스토리텔링</td><td>당시 생활상 안내 및 다도·명상 등 체험 상호작용</td></tr> </table> ○ 조치완료일 : 2026년 3월 31일	국가보훈부	문체부 (한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연천군, 경주시, 인제군 등)	독립운동가 3인 대상 (김구·안중근·윤봉길)	고종 황제	선사시대 인물(ICEMAN), 해초, 한용운 등	보훈에 대한 흥미 유발 목적 및 보훈정신 함양 역사교육	문화유산 홍보 및 역사 관광자원화	지역 관람객 유치 및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경험 제공	독립운동 역사 및 유공자 개인 철학 기반 인터렉션, 기능 역사퀴즈 등 교육 콘텐츠	박물관/궁궐 등 전시 유물 및 시대상 해설, 특정 문화·역사적 테마 중심의 스토리텔링	당시 생활상 안내 및 다도·명상 등 체험 상호작용
국가보훈부	문체부 (한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연천군, 경주시, 인제군 등)												
독립운동가 3인 대상 (김구·안중근·윤봉길)	고종 황제	선사시대 인물(ICEMAN), 해초, 한용운 등												
보훈에 대한 흥미 유발 목적 및 보훈정신 함양 역사교육	문화유산 홍보 및 역사 관광자원화	지역 관람객 유치 및 체험형 스마트관광 콘텐츠 경험 제공												
독립운동 역사 및 유공자 개인 철학 기반 인터렉션, 기능 역사퀴즈 등 교육 콘텐츠	박물관/궁궐 등 전시 유물 및 시대상 해설, 특정 문화·역사적 테마 중심의 스토리텔링	당시 생활상 안내 및 다도·명상 등 체험 상호작용												
(27) 연례적인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 내역변경 지양 및 기념식별 구체적인 계획 또는 매뉴얼 수립 필요	○ [지적사항] 2024년도에 2·28민주운동기념행사 등 11개의 정부기념행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초 본예산 29억 6,700만원 대비 6.6% 수준인 1억 9,600만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하여 증액하여 집행함 ○ 동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훈기념행사를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으나,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국회가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음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항목에 “해당없음”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기재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정부기념행사의 추진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예산의 전용이나 조정을 지양할 것 ○ 국가보훈부는 제출 자료에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향후 정부기념행사별 면밀한 사전점검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예산 반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25년은 타 사업으로부터의 전용 없이 거행 완료 ○ 향후 제출자료에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8) 편향적 활동 단체 지원 제외 기준 마련 필요 등	○ [지적사항]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등 특정 정치·이념 성향의 조직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등 헌법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이어온 단체임 - 해당 사업회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라는 주장을 하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하야가 곧 민주주의를 지킨 행위라고 주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단체는 최근 3년간 총 8,500만원의 보훈 예산을 지원받아 주로 기념식·추모식·행사성 사업에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단체에 예산 지원은 부적절함 -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49주년 기념식에 300만원,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 59주기 추모식에 500만원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민간단체 지원 평가기준(공통·신규·유지/확대·축소/제외)에 따라, 헌법 가치 위반·역사적 사실 왜곡 등 편향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훈부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 ○ 향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같이 역사적 사실 왜곡·편향적 활동이 논란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훈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할 것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공통·신규·유지/확대·축소/제외)에 따라 결정하며, 주관 민간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갈등 또는 분쟁이 있을경우 예산을 미지원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음 ○ 향후, 민간단체의 목적 및 사업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29) 의전단 처우 개선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대전현충원에서 운영 중인 의전단(35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지속되고 있고, 의전단과 실무원의 통합 논의도 지연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의전단과 실무원 통합을 포함한 의전단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노동조합과 의전단과 실무원 통합에 합의(7.21)하여 이천호국원('25. 12월)을 시작으로 순차적 통합 중에 있으며, 대전현충원 의전단에 대해서도 노조 및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0) 국립신 암선열 공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	○ [지적사항] 2024년 내역사업인 시설보수공사의 내내역사업으로 “경비실 신축공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선행 절차인 공원조성계획 및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국립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 당시부터 누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전액(1억 8,500만원) 집행되지 못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공원조성사업 계획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누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향후 국립묘지의 신규 공사 추진 등을 계획함에 있어, 필요한 선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26년 중기사업계획’에 반영하였음 ○ 또한, 향후 국립묘지 시설 공사 추진 시 관련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31일
(31) 신규 국립묘 지 조성 사업의 관리 강화	○ [지적사항]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중 횡성호국원은 주민 반대에 따른 협의 절차로 설계가 지연되었고, 장흥호국원은 총사업비 조정 소요로 기본설계 착수 자체가 지연되었음. 이로 인하여 2024년 설계비 대부분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신규 국립묘지조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추가 국립묘지 건립 시에는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	○ 신규 국립묘지 조성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과제관리카드 작성 및 주간 공정회의를 통해 주기적 사업 현황 파악 * 과제관리카드(‘25년 분기별 작성), 주간 공정회의(연천현충원, ’25년 4월부터 실시)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32) 묘역관 리 예산 편성 추계 정확화 필요	○ [지적사항] 안·이장 신청이 급증하게 되는 국립묘지 개원 초기(2022년) 신청 현황 통계를 기반으로 안·이장에 소요되는 묘역관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이 부진(집행률 63.9%)하게 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안·이장 건수를 예측함에 있어 과거 평균 안·이장 신청 현황 통계뿐만 아니라 실제 안·이장 추세 등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	○ ’25년 예산부터는 안장 현황 통계 및 실제 안·이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요구 등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3) 제대군 인 대학교 수업료 지원비 율 상향 또는 지원대 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지적사항] ‘제대군인수업료지원’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기복무 자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의 경우 대상인원과 집행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21년도부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것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 집행액은 앞으로도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집행 저조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여 제대군인수업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제대군인수업료지원 내역사업 ‘24년 예산 121백만원 대비 63백만원 집행(52%)으로 저조하여,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의 본인 부담금 50% 지원을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후 관련 법률개정을 국회의원 대표발의 추진 - 제대군인법 개정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25.6.25.) *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계류 중 (’25.8.26.) ○ 조치완료일: 2025년 6월 25일
(34) 추계 오류 및 형식적 인 예산편 성 지양 필요	○ [지적사항] 전직지원금이 인상된 2022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상금’사업에서 각각 9억 1,500만원과 30억원을 이용하여 부족분을 충당함. 2024년에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 및 2023년보다 훨씬 큰 금액인 49억 4,600만원을 이·전용 증액함 -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중기 및 장기복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신청인원을 2020년 신청자 수보다 적은 숫자로 계상하여 가장 큰 이·전용이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5년도 신청자 수 및 지급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6-’30년 중기사업계획 제출 - (’26년) 9,583백만원 → (’27~’30년) 24,790백만원 ○ 조치완료일 : 2026년 1월 28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5)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의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국가보훈부는 유가족의 고령화, 직계존비속이 없는 등의 문제로 대규모 귀환행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설명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비협조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3년간 전혀 집행실적이 없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주도로 관련 행사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국방부 및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협의가 어려울 시 국가보훈부 자체 행사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25.9.~1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의 실무 협의, 협조공문 발송, 지역 현장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 ○ '25년 하반기 중 귀환행사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였으나, 유가족 건강상 이유 등으로 행사 개최를 희망하지 않아 행사를 미개최 하였으나, ○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자택방문 약식 귀환 행사에 지방보훈청장이 참석하여 유가족 예우를 실시하였음. ○ 한편,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라 '26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동 사업은 '26년 폐지됨. ○ 향후에도 유해발굴감식단 주관 귀환행사 시 호국영웅 귀환패 및 유가족 위문품 지원 등 유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36) 현실적 인 소요 기간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지역별·학교별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의 2024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지역별 명비는 당초 계획대로 2개 지역에 2억 3,400만원을, 초중고 명비는 2개교에 계획보다 많은 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학교 명비(3개교 대상 각 1억원)는 전액 미집행하였음. 대학교 명비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사업계획 수립 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요구되는 각인대상 명단 확인 작업에 2개월만을 배정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정밀히 수립하고,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24년 이월된 대학교 명비 건립 완료하였음 - 향후에도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9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7)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사업 계획 철저 필요	○ [지적사항] 불용액 24억 2,700만원은 사망·불희망 등 제복 미신청(13억 2,700만원), 모자 미제작(9억원), 낙찰차액(2억원) 등으로 구성됨 ○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데, 특히 불희망자 및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신청률이 저조하고, 국가유공자의 요양원 입소, 병원 장기 입원, 제복의 색상 및 질 등의 불만족으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임 ○ 행사성 일회성 지출로 지속적 효과가 불명함 ○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만족도를 89.5%로 발표했으나, 조사대상이 제복수령자 200인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한 조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인원을 정확히 추계하고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국가보훈부는 2023년과 2024년 제복증정 사업의 공개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와 심사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할 것	○ 전문가 참여, 공정·객관적인 제작업체 기술 평가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 제출하였음('24.12월) * 2024년 단년도 사업 ○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대상 인원 및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사전 수요파악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 효과성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38) 연례적 인 이월이 반복 중인 정책연 구용역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보훈정책개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부진하며 연구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한 이월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에는 4억 1,600만원이 이월되어, 최근 4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연구용역의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가 늦어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연구용역 사업액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기를 앞당기고, 연구 연장을 최소화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를 강화할 것	○ 부처 차원의 연구용역사업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하였음('25년 1월) - 계약지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4년 12월 말에 '25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25년 1분기 내 연구기관 선정 완료하도록 조치 - 매월 과제 진행사항 점검 및 추진 독려 - 과제별 담당관(부서장) 지정하여 성과 및 활용도 관리 ○ 조치완료일 : 2025년 11월 14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9) 국가보 훈대상 자 생활실 태조사 의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응답률 저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여 연구기간이 길어진 결과 이월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당초 추진일정은 계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고, 조사 결과보고서는 2024년 12월에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응답률 저조로 실태조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변경계약을 2024년 12월에 체결하고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에 제출받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향후 생활실태조사 시 필수적인 조사문항은 살리되 응답자에게 너무 민감하거나 정책적 함의가 크지 않은 항목들은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항목들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모바일조사 등 비대면 조사의 비중을 늘리는 등 응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4년 실태조사 시, 면접조사 협조율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조사 병행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하였음 ○ 향후, 모바일조사 병행 및 행정기관(국세청 등) 보유 정보 활용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3월 28일
(40) 후순위 투찰업 체와의 계약 체결 재발 방지 필요	○ [지적사항] ‘추석 계기 장관 위문품 구매’ 시 국가보훈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아닌 63개의 적격 업체 중 53번째 순위로 응찰한 업체임 - 적격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1순위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업 수행의 시급함을 고려해 2일의 기한을 부여하고 과업 수행 가능 여부를 회신토록 한 뒤, 해당 기한 내 회신한 3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임 ○ 법령이 정한 경쟁절차 외에 별도의 응모를 재차 요구하면서 회신 기한도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것은 발주처의 사정을 이유로 참여업체 간 정당한 경쟁을 제한하는 집행 방식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정당한 절차의 이행 없이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질서의 공정성 및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가유공자 등 위문품 구매를 위한 계약 체결 시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026년도 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 계기 위문품 구매계약 시 경쟁입찰 및 나라장터 구매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과업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정한 절차에 맞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 추진(‘26년 1분기)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1) 홍보성 행사 지양 및 교육·상 담 중심으 로 개편 필요	○ [지적사항] 동 프로그램은 멘토 활동 지원 및 자녀 국제 교류캠프 행사 등 행사·홍보 위주로 운영되는데, 가족 기능 개선, 재이용률, 중장기 건강 지표 변화 등 결과지표가 부재하고, 멘토 선정 기준 및 행사 기획·운영에 미흡함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홍보성 행사를 지양하고 교육·상담·생활지원 등 실질적 복지로 전환하는 한편, 유사사업과 중복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	○ (홍보·행사 지양, 실질복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홍보성 행사 위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 유족 대상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 프로그램 운영 후 정서안정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효과성을 점검하고 * ('24년 조사 결과) 정서안정도 78.7점 / 만족도 87.5점 - 유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심리상담 및 전문컨설팅 등을 확대·강화하겠음 ○ (유사·중복 방지)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이 아닌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점검 후 운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보훈업무시행지침에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반영
(42) 연내 집행 가능성 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및 사업관 리 철저 필요	○ [지적사항] 보훈요양원 건립·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부지 매매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 - 2024년 수원 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및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률이 각각 2.3%, 41.0%에 불과 ○ 착공 및 완공 시점이 재차 연기되고 있어, 증가하는 보훈요양시설 이용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증가 우려까지 초래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사전절차 이행 점검 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총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것	○ 향후 보훈복지시설 건립 계획액 편성 시 사업 진척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겠음 ○ '26년 계획액에는 사업 진척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사업은 잔여사업비의 37% 수준만 반영하였으며,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6년 사업비를 미편성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3) 민간요 양시설 보조금 지급 인원 산정의 합리성 제고	○ [지적사항] 민간요양시설 이용 보조금 지급 인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 편성으로 인해 매년 자체변경을 통한 재원 조달이 반복되고 있음 - 매년 지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실적이 아닌 전년도 편성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감율을 적용하고 있음 ※ 자체변경 내역: 2020년(391백만원) → 2021년(502백만원) → 2022년(974백만원) → 2023년(593백만원) → 2024년(869백만원)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자 증가 추세 및 대상자 분류별 지원 예상 인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을 추산할 것	○ 고령화에 따른 민간요양시설 지원인원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지원 인원 및 단가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산출하고,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소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44) 보훈원· 복지타운 입주율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보훈원과 복지타운의 입주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데, 국가가 무의탁 고령 유공자에게 양질의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훈원과 보훈복지타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속히 시설 개선에 착수할 것	○ ‘26년 보훈복지타운 개보수 예산 30억을 확보하였으며, 개보수가 시급한 입주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45) 보훈급 여금 과오급 금 최소화 노력 필요	○ [지적사항] 2021·2022·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수 차례 과오급금 수납실적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국가보훈부는 여러 수납 실적 제고 방안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개선은 없는 상황임 - 국가보훈부가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과오급금 분할납부제, 납부기피자 연체금 징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연계,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강화 등의 후속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 행정착오 과오급금 최소화 - 행정착오 발생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패널티 부여 - ‘주간결산제’를 통한 반복점검, 직무교육 등 실시 - 지방관서 보상금 담당자 대면교육 실시(’25.11.28.)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법원행정처와 협업(혼인 변동사항 확인) 시행(’25.5월~)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행정 미숙으로 인한 착오 건수를 줄이도록 하고, 기관 간 정보의 적극적인 공동 활용 또는 실시간 통지 등의 방안 강구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 과오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과오급금 수납물을 제고할 것	<연계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계 기관</th><th>정보</th><th>주기</th></tr> </thead> <tbody> <tr> <td>행안부,복지부</td><td>사망의심자</td><td>일 1회</td></tr> <tr> <td>경찰청('23~)</td><td>범죄·실종</td><td>연 1~2회</td></tr> <tr> <td>법무부</td><td>교정</td><td>연 3회</td></tr> <tr> <td>법원행정처('25~)</td><td>혼인</td><td>연 1회</td></tr> </tbody> </table> - 향후에는 관계 기관과의 신상변동 정보 연계 주기도 단축 예정임('26.12월)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관계 기관	정보	주기	행안부,복지부	사망의심자	일 1회	경찰청('23~)	범죄·실종	연 1~2회	법무부	교정	연 3회	법원행정처('25~)	혼인	연 1회
관계 기관	정보	주기															
행안부,복지부	사망의심자	일 1회															
경찰청('23~)	범죄·실종	연 1~2회															
법무부	교정	연 3회															
법원행정처('25~)	혼인	연 1회															
(46) 보상금 지급인 원 추계 방식 개선	○ [지적사항] 매년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계오차로 인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타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음 ※ (추계오차) 지급 예상인원: 191,448명 / 실제 지급인원: 189,065명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을 추계함에 있어 산정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편성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 현황, 제도 시행 시점, 지급인원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연례적인 대규모 이·전용 문제를 최소화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집행잔액의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지양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과거연도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인원을 추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 '24년 보상금 추계인원은 3년 지급인원 증감율을 일괄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26년 보상금 추계인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을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3~5년 증감율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적정 추계함 - '25년 보상금 추계인원 189,728명 → '26년 보상금 추계인원 188,188명('25년대비 △1,540명)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7) 모니터 링 강화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2022~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업선정 시 추진가능성 철저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2024년 계획된 사업 13개소 중 2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포기에 따라 취소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월되었음. 이로 인하여 다른 지자체 기회 상실 및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불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로 보고할 것 ○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 사업 의지와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진행 단계를 고려하고 매월 공정률을 점검, 집행 부진 지역 소통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음 ○ 기존에는 이월 발생시 지방보훈관서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본부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업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음 ○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신규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6일
(48) 시내버 스 이용 지원 미지급 금 누적 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버스무임 및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사업수행자에게 보훈대상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대납액을 모두 정산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지급이 미루어진 바, 이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024년 지급 대상액 171억 500만원 중 99억 2,500만원은 다음 연도 이후로 지급이 미루어짐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누적된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23~'24년 시내버스 이용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금을 포함한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 '26년 시내버스 예산 11,047백만원 증액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국가보훈부의 교통복지카드 사업은 전국호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 판단 실패를 보여줬고, 그 결과 재정 비효율성과 미지급금 누적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 누적 및 예산 과소편성 문제를 개선하고, 카드 운영대행사 선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향후 국고부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제도개선) ○ 국가보훈부는 편의성과 영예성 증진이라는 해당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살리되, 예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절차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제도개선)	
(49) 독립기 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 는 운영 철학 및 체계 재정립	○ [지적사항] 독립기념관장은 개인적 인맥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활용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의전을 맡기는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 및 운영 원칙을 훼손하였음. 또한 일반 관람객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유물 수장고 관람을 특정 집단에 허용하는 등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음 - 관장에게는 2024년에 48,492,000원의 급여와 4,384,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됨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에 지급되는 급여와 경상비 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운영 철학 및 체계를 재정립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의 시설·인력 운영 과정에서 시설 대관 및 활용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정 집단·개인의 종교적·사적 목적 사용을 차단하고, 사적 행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과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유물 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적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시정)	○ 지적사항과 관련한 감사 실시('25.9.~12.) 및 처분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추진 예정으로, 향후 동일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음 - 독립기념관 「장소사용에 관한 내규」 개정(내부이용자 장소사용절차 보완) 완료('25.12.16.) - 장소대관 승인 시 정치·포교활동 금지사항 준수 철저 - 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 실시('25.12.9.)를 통해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재발 방지 조치 - 「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운영 규정」에 따른 관장 직무청렴계약제 이행 철저 및 관장의 청렴교육 정기 이수 - 독립기념관 정관('26.6.1.) 및 임추위운영규정('26.5.15.) 개정을 통해 임원 임면 절차 및 후보자 검증체계 강화 - 관련자 신분상 처분 완료('26.7.7.) ○ 조치완료일 : 2026년 7월 7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0)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 리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은 2023년 실시설계 완료로 전제로 2024년 상반기 이후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공사비가 2개년에 걸쳐 편성됨. 그러나 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해 서울시의 공유재산 심의가 2025년 3월에 의결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현재까지도 독립의 전당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과정에서 설계안이 대폭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기존 119억원에서 상당 규모 증액이 불가피함.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발생함 -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고 가정해도 연내에 공사 관련 계약 체결은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현충시설 건립 시 사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사업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시정) ○ 국가보훈부는 향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인허가·심의 절차 지연 가능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의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사전 검토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총사업비 증가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해당사업에 대해 상당 기간에 걸쳐 논의하였고,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 실행을 앞두고 있는 바, 국회에 대해 적극적인 보고가 필요하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 건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제도개선)	○ 지적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25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 ○ 향후 현충시설 건립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29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1) 수업료 국비보전 금 등의 미지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4년 보훈부 자체감사에 따르면, 다수의 지방보훈청에서 수업료 국비보전금·학습보조비·장제보조비의 미지급 사례가 확인됨 - 수업료 국비보전금: 3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0건, 859만원 미지급 - 학습보조비: 4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7건, 238만원 미지급 - 장제보조비: 4개 지방보훈청에서 총 189건, 3,780만원 미지급 ○ 해당 지방청들은 이미 2021년 자체감사에서도 동일한 수업료 국비보조금 미지급 사례가 지적된 바 있으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보훈부는 특정 청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미지급 사례를 확인·지급하고,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업료·학습보조비> ○ 미지급 수업료·학습보조비 지급 완료 ('25.7월)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등 관리체계 강화 - 체크리스트 제작·배포('25.10.29.) - 영상회의 개최(사례공유) 및 직원교육 실시('25.11.6.) ○ 교육비 미지급 사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활용 - 자녀 추가등록 시 “중·고·대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지원 확인” 안내 문자 자동발송 시스템 개선('25.11월) - 시스템을 통해 매월 신규등록자 명단 추출 후 교육지원 안내 <장제보조비> ○ 미지급 장제보조비 안내 완료 및 지급 완료 - 장제보조비 미신청자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3회 이상) 및 지급 완료 * 지급 비대상자의 경우, 통합보훈시스템에 입력 완료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지방관서 보상금 담당자 대면교육 실시('25.11.28.)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52) 기금 수입을 현실적 으로 계상하여 기금 운용	○ [지적사항] 88골프장 매각대금은 2010년 이후 보훈기금수입에 연례적으로 계상되고 있으나, 매각이 실현되지 않아 수입결손이 초래되고 있음. 국가보훈부는 2018년 2월 기획재정부 기능조정과제 심의 이후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2025년 2월에서야 비로소 매각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음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 용역('25.7~11월) 결과, 88골프장 매각 편익보다 지속 운영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관계기관과 매각 철회 협의를 거쳐 보훈기금 수입계획을 현실화하겠음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계획의 신뢰성 제고 필요	○ 골프장 매각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보훈기금에는 매년 매각대금이 수입에 계상되고 있어, 기금운용 계획과 실제 기금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조속히 88골프장 매각 여부를 확정 후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	○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52) 지급계획 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	○ [지적사항] 보상금 집행잔액에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 이·전용 규모는 642억 4,7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보상금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제 지급인원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임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상금 지급인원 감소 추세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급대상자 현황 파악 등을 바탕으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보상금 잔액을 활용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 '21~'24년 인원 추계 시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등 '3개 그룹'으로만 나누어 2~5년 증감율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26년 보상금 인원 추계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을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2~5년 증감율을 선별적용하여 추계정확성 제고 - '26년 보상금 추계인원 187,020명('25년 대비 △2,708명, △1.4%) ○ 조치완료일 : 2025년 4월 30일
(53)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가능 성 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특히 2021년부터는 이월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지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지자체 사업 포기(부산 서구, 충남 홍성군)로 3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실집행률 부진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보조사업의 실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보훈회관 건립 준비정도를 면밀히 살펴 잘 준비된 지자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정율을 점검, 지자체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집행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음 ※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훈회관 건립지원 지침 개정 완료('24년 4월) ① 지방보훈회관 건립 심의위원회 신설 ② 사업 포기시 국비 신청 제한 규정 신설 ○ 조치완료일 : 2024년 4월 30일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4)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 철저 준수 필요	○ [지적사항] - 보훈문화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2건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9,200만원 중 5,500만원)를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낙찰차액을 활용함으로써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것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직원교육 및 철저한 사업관리 등 행정적 노력 강화 사업 담당 직원 대상 ‘예산 집행 철저’ 교육 ○ 향후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55)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 필요	○ [지적사항] 보훈기금 기금운용계획에 88골프장 매각을 통해 수입을 얻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구체적인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입계획을 편성할 것	○ '25년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매각방향을 확정하고 보훈기금 수입계획을 편성할 예정 - 88골프장 매각 여부에 대한 편익비교분석 연구용역 추진('25.7월~11월) ○ 조치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56) 재향군인회 재무정상화 필요	○ [지적사항] 재향군인회는 2023회계연도말 자본총계가 약 △13억원으로 부채 초과 상태에 이르렀음 ※ 재향군인회 자산총계 및 감사의견 (단위: 백만원) <table><tr><th>회계연도</th><th>자산총계</th><th>부채총계</th><th>자본총계</th><th>감사의견</th></tr><tr><td>2019</td><td>691,701</td><td>656,182</td><td>35,519</td><td>의견거절</td></tr><tr><td>2020</td><td>562,747</td><td>532,968</td><td>29,779</td><td>한정의견</td></tr><tr><td>2021</td><td>530,649</td><td>510,274</td><td>20,375</td><td>한정의견</td></tr><tr><td>2022</td><td>528,399</td><td>512,011</td><td>16,389</td><td></td></tr><tr><td>2023</td><td>515,621</td><td>516,911</td><td>(1,290)</td><td></td></tr></table> 자료: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 ○ [시정요구사항] 국가보훈부는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으로서 재향군인회 재무상태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감사의견	2019	691,701	656,182	35,519	의견거절	2020	562,747	532,968	29,779	한정의견	2021	530,649	510,274	20,375	한정의견	2022	528,399	512,011	16,389		2023	515,621	516,911	(1,290)		○ (추진사항) 재무상태 정상화를 위한 자체 개선방안 수립 - (자산평가 방법 개선) 재향군인회 산하 시도회가 보유중인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원가 → 공정가액 반영)를 통해 자산 가치 현실화 추진('24년 재무제표 반영 예정) - (자체 재정개선방안 지도 점검) '23.4월말 재향군인회는 핵심자산 매각을 포함한 자체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철저한 이행을 위한 반기별 지도·점검 진행 * ('24.12말 기준 개선 실적) 본회 운영비 절감 및 수익사업 수익성 개선 ○ (향후계획) '24년말 결산을 반영한 종합 점검을 통해 재정개선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 조치완료일 : 2024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감사의견																												
2019	691,701	656,182	35,519	의견거절																												
2020	562,747	532,968	29,779	한정의견																												
2021	530,649	510,274	20,375	한정의견																												
2022	528,399	512,011	16,389																													
2023	515,621	516,911	(1,290)																													